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882-10



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일 / 러 / 두 / 기 —

- ◆ 이 안내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시·도지사’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합니다.

CONTENTS

I 개요	1. 목적 및 연혁	7
	2. 사업추진체계	8
	3. 운영 형태	9
	4. 주요 현황	12
I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15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21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23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26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27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28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	29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30
	8. 기부식품 관리	33
	9. 기부생활용품 관리	37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39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41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41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42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43	

Ⅲ 기 타

1. 불임자료	49
(불임 1) 사업자 신고서	51
(불임 2) 사업계획서	52
(불임 3) 신고확인증	53
(불임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55
(불임 5)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56
(불임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시설·단체)	58
(불임 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요청서	61
(불임 8) 장부가액 증빙 양식	63
(불임 9) 기부식품등 영수증	65
(불임 10) 기부금 영수증	66
(불임 11) 기부식품등(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68
(불임 12)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69
(불임 13)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70
(불임 14)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80
(불임 15) 철화·폐업 신고서	82
(불임 1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	83
(불임 17)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	86
(불임 18)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대장	88
(불임 19) 차량운행 및 정비 관리 대장	89
(불임 2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90
(불임 2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91
(불임 22)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96
(불임 23) 위생점검일지	97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99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현황	135

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광역지원센터 역할	10	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역할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조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역할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조사 및 점검 * 전국지원센터 요청시 기초사업장의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 공유	사업장 점검 체계화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마켓)	11	다.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마켓)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인 이상으로 구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해야함 (연1회 이상)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되 동일분야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부자, 이용자, 봉사자 등 다양하게 구성 *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의에 따른 결과보고서(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함(연1회 이상) ※ '(붙임22)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운영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및 운영 세부 사항 안내								
주요현황 (23.12 기준)	1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th> </tr> <tr> <td>기초푸드뱅크 (294개소)</td> <td>기초푸드마켓 (133개소)</td> </tr> </tabl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294개소)	기초푸드마켓 (133개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th> </tr> <tr> <td>기초푸드뱅크 (294개소)</td> <td>기초푸드마켓 (131개소)</td> </tr> </tabl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294개소)	기초푸드마켓 (131개소)	기초푸드뱅크·마켓 개소수 최신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294개소)	기초푸드마켓 (133개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294개소)	기초푸드마켓 (131개소)											
차량도색시안	18	- 임의신고 차량 시안 - 당연신고 차량 시안	18P 차량도색시안(임의, 당연 모두 해당)	임의신고와 당연신고의 차량도색 시안 통합								
지정절차	22	다. 지정절차(시행령 제4조의2) ① 지정하려는 사업장은(생략) - 신고 확인증 사본	다. 지정절차(시행령 제4조의2) ① 지정하려는 사업장은(생략) - 신고 확인증 사본 * 당초 시군구 지자체에서 교부하고 관리하던 신고확인증에 대한 권한이 삭제되며, 해당 권한은 광역사도로 이관됨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행정절차 안내								
이용자 선정절차	24	다. 이용자 선정절차 ■ 개인이용자 ① 이용을 원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은 소재지 내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상담 신청	다. 이용자 선정절차 ■ 개인이용자 ① 이용을 원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은 소재지 내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상담 신청(단, 특수한 경우 세대원도 가능)	세대주 신청 우선으로 가족 중복신청 방지								
		②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상담 후 '(붙임6)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작성 협조하여 해당 시군구 지자체로 송부하고 행복이음 이용자 연계 신청 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선정된 이용자에게 선정을 통보하고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이용자 등록 후 기부식품등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기부식품등 제공	②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상담 후 (중략) 행복이음 이용자 연계 하거나, 행복이음 이용자 연계가 힘들 경우 명단만 지자체로 송부. 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선정된 이용자에게 선정을 통보하고, (생략) * 행복이음 이용자 연계가 안 된 경우, 지자체에서 푸드뱅크마켓에 이용자 명단을 발송하여 FMS에 이용자 등록	행복이음과 FMS 연계 불가시 이용자 등록 방안 제시 행복이음으로 명칭 변경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서는 행복e음 연계이용자에게 자동 반려일 40일 이내 FMS상 제공 처리 하지 않으면 자동반려처리 통보됨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서는 행복e음 연계이용자에게 40일 이내 FMS상 제공처리 하지 않으면 자동반려처리 통보됨	불필요 문구 삭제
		다. 이용자 선정절차 ■ 시설·단체 ② 해당 지자체는 신청한 지역 내 시설 단체 …(중략)… 지역 내 시설 단체를 선정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명단 송부	다. 이용자 선정절차 ■ 시설·단체 ② 해당 지자체는 신청한 지역 내 시설단체 …(중략)… 지역 내 시설 단체를 선정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공문(명단 및 시설 단체 이용신청서) 송부	FMS 등록정보 송부 필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25	바. 긴급지원대상자(위기가구)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종사자는 이용자가 아닌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바. 긴급지원대상자(위기가구)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종사자는 이용자가 아닌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견 시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대상자와 구분 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신설>	사.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이용자 보호(개인정보) 강화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
광역지원센터 조정·배분	26	다. 광역지원센터 조정·배분 ■ 배분대상자 - 기타 기부자가 지정하는(생략)	다. 광역지원센터 조정·배분 ■ 배분대상자 - 기타 기부자가 지정하는(생략) * 기부자가 이용자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지정기부기탁서 등 서류 필요	광역지원센터의 배분대상자 선정 행정절차 보완
전국지원센터 조정·배분	27	■ 전국지원센터의 조정·배분 종류 <표> 즉시배분 : 기부물품 중 유통기한 30일 이내의 식품 등으로	■ 전국지원센터의 조정·배분 종류 <표> 즉시배분 : 기부물품 중 모집기한 이내의 식품 등으로	소비가한 도입으로 인한 모집기한 변경
기부물품관리시스템 사용	32	라. 기부물품관리시스템 사용 ■ 기부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을 기부 (중략) 포함한 내역을 기부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기부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을 기부 (중략) 포함한 내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문구 명확화
소비기한 제도 운영 관련	34	나. 기부식품의 유통(소비)기한 관리	나. 기부식품의 소비기한 관리 이하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안내 중 계도기간 내용 삭제	계도기간 종료로 '24년부터 소비기한으로 통일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35	<표>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유통기한 기준)	삭제	
		<표>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소비기한 기준)	구분, 식품군 표기, 모집 및 배분 일자변경 중앙과 광역 모집일자 통합	기부자 및 사업자 의견 반영
식품사고 예방 및 관리	36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 예방 - 시군구 담당 부서(생략) ■ 식품사고 사후 관리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 <추가> 식품 및 생활용품 보관시 생활용품으로 인한 식품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보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식품사고 예방 관련 부서 변경
생활용품 배분기한 조정	38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 개인 30일/ 시설 15일	- <수정> 이용자 배분 기한 조정 개인 40일 / 시설 30일	이용자 안전성 확보
보조인력 범위	39	※ 보조인력의 범위 : (생략) 자원봉사자	※ 보조인력의 범위 : (생략) 자원봉사자, 시니어 푸드뱅크 매니저	인력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종사자 인권보호	40	나. 인력관리	- 건강진단 항목 및 검사주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항목 등)」에 준하여 실시해야함(식품위생법 제 40 조 제1항) • 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검사주기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나. 인력관리 <신설>	나. 인력관리 ■ 종사자 인권보호	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등 안내
사업자 상시관리	43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추가> 지자체는 사업자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지자체 확인 사항 표기
		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 지자체는 (중략) ※ 미신고사업자 또는 임의신고사업자는 (중략) 신고해야 함 ■ 기부식품등 제공자(미신고사업자)의 경우에도 (생략)	미신고 사업자 삭제	미신고사업자에 대한 파악 및 관리 불가
이용신청서 (개인)	58	붙임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기타 고지사항> 추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수집 안내	개인정보 수집 법령 사항 고지
이용신청서 (시설·단체)	60	붙임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시설·단체)	사업유형(시설종류, 운영유형) 변경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분류기준으로 변경
위생관리 요령	70	붙임13.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소분 관련 사항 등 수정	위생매뉴얼 발간에 따른 보완
기초사업장 실태점검표	83	붙임16.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	<표>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중략) * 후원금 모집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실태 점검(지자체)	후원금 모집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실태 점검
광역지원센터 실태점검표	86	붙임17.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	<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관리 -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및 신규·전환 시 현장점검 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실태조사	기초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의무화
	88	붙임18. 냉장·냉동 온도관리 대장	양식 변경(1월에 1장 사용)	월 단위 관리필요
	89	붙임19. 차량운행 및 정비관리 대장	목적지 표기로 양식 변경	목적지 표기
	96	<신설>	붙임22.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위원회 운영 안내
	97	<신설>	붙임23. 위생점검일지	위생매뉴얼 발간에 따른 보완

I 개요

1. 목적 및 연혁
2. 사업추진체계
3. 운영 형태
4. 주요 현황

I 개요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이용대상자의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식품 확보를 위해 노력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나. 연혁

- '98. 1 :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구축·운영
- '06. 3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06.3.24. 공포, '06.9.25. 시행)
- '09. 9 :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1. 4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1.4.28. 공포·시행)
* (양벌규정 개정)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
- '15. 12 : 차세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구축
- '16. 2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2.3. 공포, '17.2.4. 시행)
* 기부 대상을 식품에서 개인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17.2월), 제명변경,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사업장에 대한 평가
- '18. 7 : 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이전(세종시 연동면 연청로)
- '18. 12 : 전국푸드뱅크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운영
- '19. 1 : 한국푸드뱅크 모델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수 사업 실시(몽골, 베트남)

2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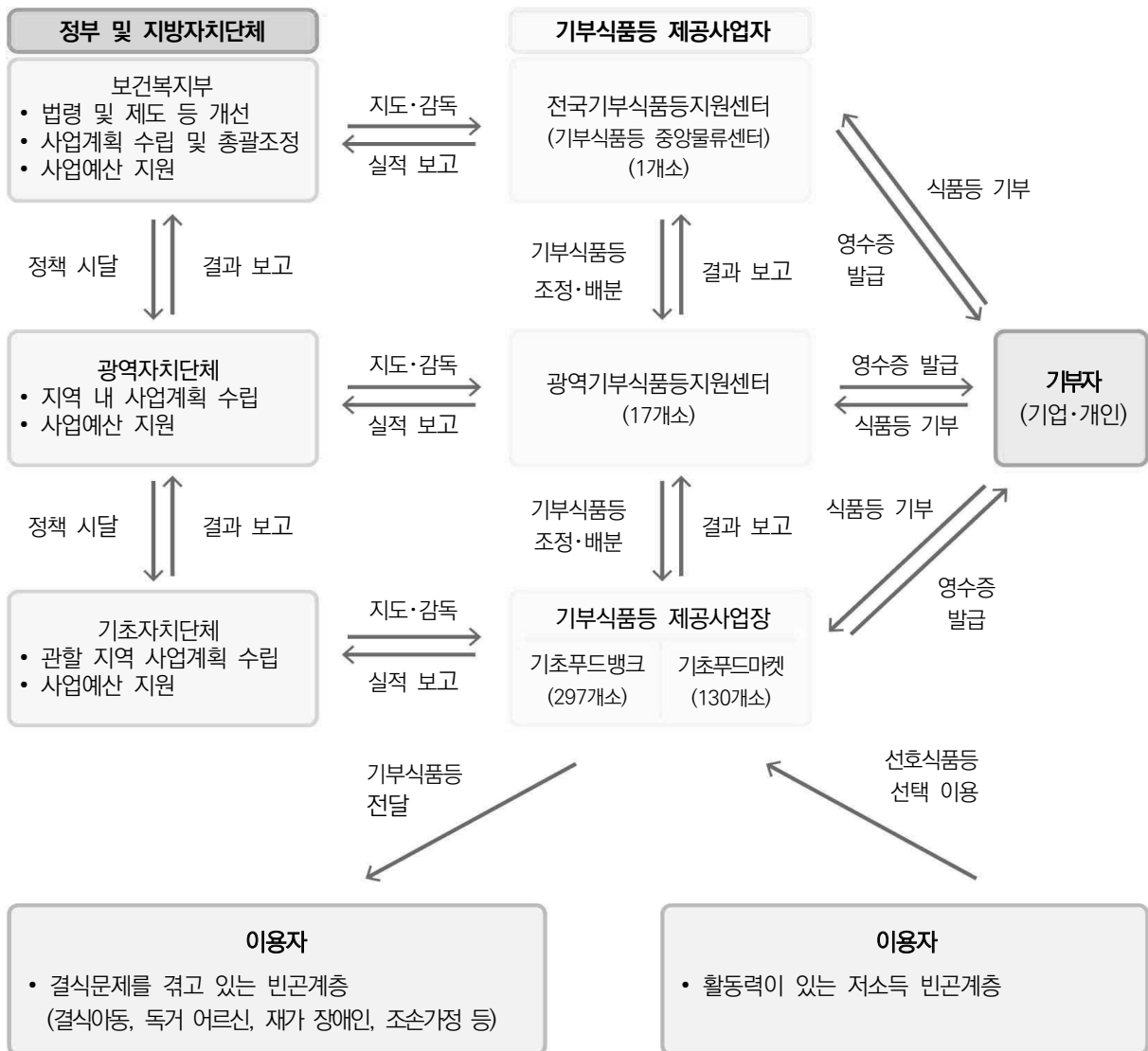
가. 제공자 :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로서, 기부자(기업·개인)와 사업자가 있음

- 기부자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
- 사업자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나. 이용자 :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로 ‘개인이용자’와 ‘시설 및 단체’로 구분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받은 식품등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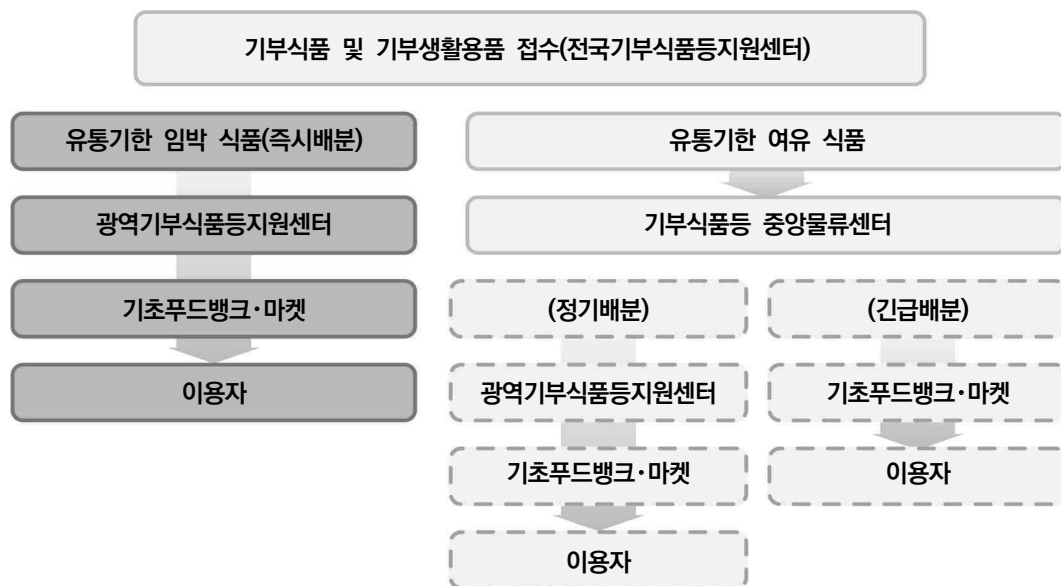
< 사업추진 체계도 >



3 운영 형태

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전국지원센터)

- 운영 목적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문화 활성화, 전국적인 모집 및 조정·배분, 교육,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하 기초푸드뱅크·마켓)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
- 역할 : 전국차원의 지원업무
 - 기부식품등의 전국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광역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조정·배분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분 실시
 - * 전국적인 통일성, 지역적인 특수성, 당연·임의 신고사업장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수도권·비수도권·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 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운영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운영
 - 전국지원센터는 사용자 계정발급 및 기부식품등의 접수·배분 등에 관한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 체계 마련
 -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등 기부식품의 효율적인 배분의 근간이 되는 전산시스템

- 전국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주요 현안 논의 및 사업 운영·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광역-기초 사업장 간 네트워크 강화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 종사자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등
- 전국단위 운영개선 방안 마련 및 실태조사·통계 관리(광역지원센터 연계)
- 전국대표번호 운영 : 전국대표번호(1688-1377) 연중 운영
- 광역지원센터 점검 : 전국지원센터에서 광역지원센터로 배분한 식품과 생활용품이 투명하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점검

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 운영 목적
 -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교육 실시, 기초단위 사업장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지정(법 제3조의 2)
- 역할
 -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 등 실시
 -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및 신규·전환 시 현장점검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 사업계획 수립(운영위원회 포함) 및 실적 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지원센터)
 -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통계 관리(전국지원센터 연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조사 및 점검
 - * 전국지원센터 요청시 기초사업장의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 공유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 기초푸드뱅크

-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하는 사업장
- 역할
 - 지역 내 식품등 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배분
 -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 ※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
 - 연도별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운영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 ※ ‘(붙임 2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운영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일분야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부자, 이용자, 봉사자 등 다양하게 구성
 - *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의에 따른 결과보고서(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함(연1회 이상)
 - ※ ‘(붙임22)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지역 내 사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광역지원센터 연계)

■ 기초푸드마켓

-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방문을 통해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토록 기부식품등을 진열·배치하는 사업장
 - ※ 개인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 내 편의점 형태로 매장을 설치·운영
- 역할
 - 지역 내 식품등 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배분
 -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 ※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
 - 연도별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운영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 ※ ‘(붙임 2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운영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일분야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부자, 이용자, 봉사자 등 다양하게 구성
 - *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의에 따른 결과보고서(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함(연1회 이상)
 - ※ ‘(붙임22)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지역 내 사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광역지원센터 연계)
 - ※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통합형 사업장은 푸드마켓으로 봄

4 주요 현황('23.12월 기준)

가. 운영 형태별

구분	계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기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43	1	17	294	131

나. 지역별(전국지원센터 제외)

(단위: 개소, '22.12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푸드뱅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기초 푸드뱅크	4	16	12	13	15	9	7	1	68	21	23	18	18	25	22	20	2	294
기초 푸드마켓	28	16	9	14	3	9	2	0	15	1	5	7	9	4	3	4	2	131
계	33	33	22	28	19	19	10	2	84	23	29	26	28	30	26	25	5	442

다. 운영 주체별(전국지원센터 제외)

(단위: 개소)

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개인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계
개소	205	57	19	11	3	72	75	442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8. 기부식품 관리
9. 기부생활용품 관리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I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법 제4조)

-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 사업

참고 : 식품 및 생활용품의 법적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8. 기타	그 밖에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활용품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2조의2)

- 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 ②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고,
 - ※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동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정치·종교적 사용, 바자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누어주는 행위 등)
- ③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다. 신고의 기준

- ① 임의신고(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
 - 신고대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임의신고 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시설 및 설비 기준 :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 또는 냉동 적재고, 온도계),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 ※ 법인 또는 운영주체의 창고를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로 분리 구획하여 사용해야 함
 -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보관창고, 식품등 진열대, 냉장·냉동 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 1층에 설치·운영 권장(「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반영)
 -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통일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심벌마크, 대표번호 등 연락처, 캐릭터 등이 삽입된 내용으로 도색해야 함

시행령 [별표 2] 시설 및 설비의 기준(임의신고)

1. 보관창고

-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연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제4조제2항 및 별표 3)

- 신고대상 :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 (1) 시설·설비 기준 :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 또는 냉동 적재고, 온도계), 1,000리터 이상의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 (2) 인력 기준 :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
 - ※ 법인 또는 운영주체의 창고를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로 분리 구획하여 사용해야 함
 -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 진열대, 냉장·냉동 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 1층에 설치·운영 권장(「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반영)
 - ※ 임의신고사업자에서 당연신고사업자로 변경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통일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심벌마크, 대표번호 등 연락처, 캐릭터 등이 삽입된 내용으로 도색해야 함

시행령 [별표 3]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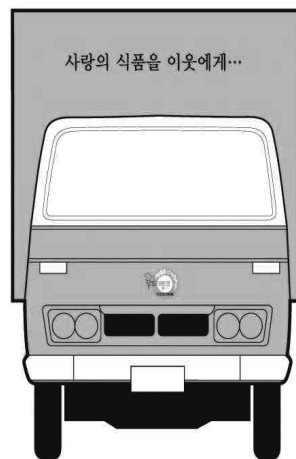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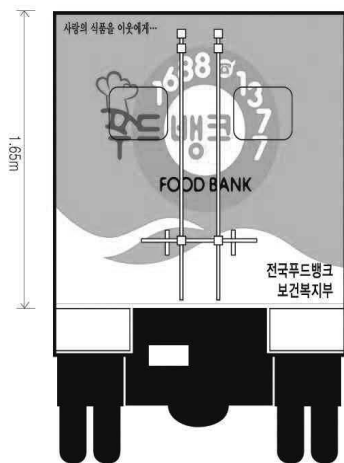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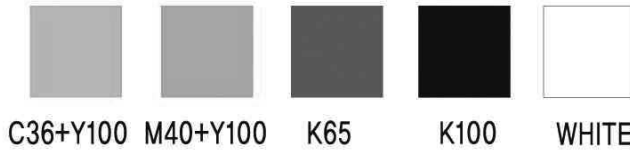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차량 도색 시안(임의당연 모두 해당)



칼라



서체

사랑의 식품을 이웃에게... :윤명조130
전국푸드뱅크 · 보건복지부 :윤고딕130

* 위 시안 외 도색 및 디자인 시안 변경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국푸드뱅크와 협의할 것

라. 신고 절차(시행령 제4조제3항 ~ 제5항)

- ①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 종류(임의신고, 당연신고)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붙임 2) 사업계획서
 - ※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장의 운영 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 시에는 사업자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며, 그 외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보고
 - 임의신고에서 당연신고로 전환
 - 광역지원센터는 전년도(1월~12월) 모집·제공실적을 확정(매년 1월 말) 후 1개월 내 임의신고 사업장 중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전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광역지원센터는 당연신고 전환대상 사업장에 통보
⇒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은 광역지원센터가 당연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전국지원센터는 확정된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을 실시
-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
 - 운영 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 실시
 - ※ 푸드마켓, 푸드뱅크·마켓 통합의 경우 적정 전용면적 확보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
 -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 (붙임 3) 신고확인증
 -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 사업자 신고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자는 이 사실을 해당 지역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지원센터에 보고(1개월내)
 - 임의신고에서 당연신고로 전환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새로 교부(신고의 종류 : 임의→당연)하되, 신고확인증 뒷면에 최초 사업자 신고일 및 변경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 시·군·구 지자체는 임의신고에서 당연신고로 전환 시 관할 광역지원센터와 협조
 - ※ 이전의 신고확인증(임의) 회수 후 교부

- 신규사업장 신고 시 지자체 필수 확인·점검사항 및 고지사항

구 분	지자체 필수 확인·점검사항 및 고지사항
확인 사항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사업자 확인)></p> <p>①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할 것</p> <p>②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p> <p>③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p> <p>* 신고시 상기사항은 신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하고, ‘(붙임 12)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를 토대로 내용 작성해야하며, 사업자가 확인사항 미충족시 신고확인증 교부 불가</p> <p>** 세부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 및 광역푸드뱅크 담당자에게 문의</p>
점검 사항	<p><시설 및 건축물></p> <p>① 임의신고일 경우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규격 제한이 없으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도 가능, 불법 임시 건물은 사용 불가</p> <p>② 푸드마켓의 경우 전용면적 유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고려</p> <p>③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함, 차량 운행 일시, 점검일지 작성</p> <p>④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의 명의일 것</p> <p>⑤ 냉장·냉동시설 : 냉장 10℃ 이하로 가동, 냉동 -18℃ 이하로 가동되는지 확인</p> <p>※ 시·군·구 지자체는 신규사업장 신고 시 현장 확인 등을 관할 광역지원센터와 협조</p>
고지 사항	<p><주요 사항></p> <p>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할 것(시행령 제2조의2)</p> <p>②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것(시행령 제2조의2)</p> <p>③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및 모집·제공 결과를 운영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시행령 제5조)</p> <p>④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수집(시행령 제7조의2)</p> <p>⑤ 푸드뱅크·마켓 위생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연 1회 이상,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p> <p><교육 이행></p> <p>① 필수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회 이상 식품위생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개인정보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 수료 <p>② 권장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능력 향상 교육 수료 - 정보화 교육 수료

마. 추가 조치사항

- 신고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 푸드뱅크·마켓 통합사업장인 경우 푸드뱅크·마켓을 통합 명시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법 제3조의2)

-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할 수 있으며,
- ② 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기준(법 제3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및 별표4)

- ① 전국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설비·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전국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 ② 지정 기준(시행령 [별표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법인 명의일 것

구 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 시설	가. 사무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다.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8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2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지정 절차(시행령 제4조의2)

- ① 지정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지정기준을 갖춘 후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신고확인증 사본
 - * 당초 시군구 지자체에서 교부하고 관리하던 신고확인증에 대한 권한이 삭제되며, 해당 권한은 광역시·도로 이관됨.
 -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 ② 지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 실시
 -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사업장의 운영 주체 변경 시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하며, 그 외 변경사항은 발급받은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보고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정서 뒷면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라. 추가 조치사항

- 전국지원센터를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신규 전국지원센터는 이 사실을 광역지원센터에 통보
-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정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광역지원센터는 이 사실을 전국지원센터에 보고
- 지정된 지원센터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지원센터임을 명시
 - 전국지원센터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각 광역지원센터는 '○○특별(광역·자치)시·도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명시하되, 각각 '전국푸드뱅크'와 '○○특별(광역·자치)시·도푸드뱅크'로 통칭하여 사용 가능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가. 이용자 발굴

-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파악하여 이용자 적극 발굴
- 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기타 민간복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나. 이용대상자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등이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③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기초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
 - * 단,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위기가구)가 발굴된 경우에는 기부식품등을 선(先)지원하고, 지원 후 지자체 보고 및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열거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부식품 등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됨)
 - 다만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에게 제공 가능(가족 구성원 수·경제활동·학비 등 감안, 상담 실시)
 - ※ 이용자 선정 시 기부식품등 지원 필요성 여부를 기초사업장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조손가정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 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 또는 유통기한 임박 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된 경우,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시설·단체 중,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
 - ※ 시설·단체에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 있게 배분하되, 사회복지시설을 우선하여 지원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및 종교 기관·단체 등에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

다. 이용자 선정 절차

■ 개인이용자

- ① 이용을 원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은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내방 하여 상담 신청(단, 특수한 경우 세대원도 가능)
- ②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상담 후 ‘붙임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작성 협조하여 해당 시·군·구 지자체로 송부하고 행복이음 이용자 연계 하거나, 행복이음 이용자 연계가 힘들 경우 명단만 지자체로 송부
 - ‘붙임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를 작성시, 신청자의 정보열람이 가능한 경우(정부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 붙임의 세부자료는 상담자(행정복지센터)가 작성하며, 열람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함.
- ③ 해당 지자체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기부식품등 확보량,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후 이용자 선정
- ④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된 이용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해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으로 송부
 - 이용신청서는 지자체에서 보관하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는 붙임의 세부자료만 송부하도록 함.
- 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선정된 이용자에게 선정을 통보하고, 기부물품관리시스템 (FMS)에 이용자 등록 후 기부식품등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기부식품등 제공
 - * 행복이음 이용자 연계가 안 된 경우, 지자체에서 푸드뱅크마켓에 이용자 명단을 발송하여 FMS에 이용자 등록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서는 행복이음 연계이용자에게 40일 이내 FMS상 제공처리 하지 않으면 자동반려처리 통보됨

■ 시설·단체

- ① 기부식품등이 필요한 지역 내 시설단체에서는 관할 지자체를 내방 및 문의하여 상담신청
 - ※ (붙임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시설·단체)
- ② 해당 지자체는 신청한 지역 내 시설단체 중 이용 규모, 정부지원 정도, 위생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시설·단체를 선정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공문(명단 및 시설·단체 이용신청서) 송부
- ③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해당 시설·단체를 이용자로 등록 후 기부식품등 제공
 - ※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 있게 배분하되, 사회복지시설을 우선하여 지원

라. 기부식품등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 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등을 제공. 다만,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통하여 기부식품등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 기초사업장은 제공 기간 연장과 관련한 자료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연장신청 시 ‘이용대상자 지원연장 요청서(문서, 확인서)’로 같음
 -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 이용자가 지원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 기초사업장은 부정행위 발견시 즉시 지자체에 알려야 하며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이용정지를 통보

마.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지원센터에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사업자별 손해보험 가입 불필요)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 한함
 - ※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 공지사항 참조
- 이용자가 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입원)하여 부득이 이용을 못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되 퇴소·퇴원 시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잔여기간만큼 재지원 가능

바. 긴급지원대상자(위기가구)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종사자는 이용자가 아닌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견시 기부식품등을 우선 지원하고, ‘(붙임 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의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 해당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붙임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요청서’를 제출한 뒤, 관련 서류 원본은 기초사업장에서 보관
 - ※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FMS 내 ‘위기가구’ 항목을 통하여 지원처리
- 각 시군구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리플렛 등을 받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내 발간자료를 비치

사.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을 수료해야 하며, FMS에서 기부자 및 이용자 명단을 다운받을 시 적절한 사유를 입력하고 암호화 처리

참고 :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중략)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가. 개요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기준을 정함
-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이란 일정한 기준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함

나. 전국지원센터 조정·배분

- 배분대상자
 - 광역지원센터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자
 - 기타 기부자가 지정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용자 또는 전국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배분제외 사유
 - 법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처분 대상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정치적·종교적 사유, 수익 추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배분 제외의 필요가 있는 경우
 - 광역지원센터에서 배분 제외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거부 등 전국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배분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광역지원센터 조정·배분

- 배분대상자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간의 협력 배분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 기타 기부자가 지정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용자 및 광역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 기부자가 이용자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지정기부기탁서 등 서류 필요
- 배분 제외 사유
 - 법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처분 대상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정치적·종교적 사유, 수익 추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배분 제외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배분 제외를 요청한 경우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상에 기부물품의 접수 및 제공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지원센터의 사용권고 후에도 FMS를 미사용하는 사업장
 - ※ 광역지원센터는 사업장별 제공 현황을 매월 확인(말일 기준)하여 전국지원센터에 통보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상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 이상인 사업장
 - ※ 광역지원센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폐기 현황을 확인하여 전국지원센터에 보고하고, 광역지원센터는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거부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배분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절차(공통)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지원센터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부식품등의 양적·질적 지원이 최대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및 지원기준은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

마. 조정·배분 기준

- '24년도에 전국지원센터에서 광역지원센터(사업자 포함)에 지원하는 기부식품등의 규모는 '23년도 전국지원센터의 접수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전국지원센터의 조정·배분 종류

구 분	사업내용	배분 규모	배분 주기
즉시배분	기부물품 중 모집기한 이내의 식품 등으로 신선도 등 품질 유지를 위하여 전국지원센터의 미검수 하에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사업자 포함)로 즉시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연중수시
정기배분	중앙물류센터에서 전국의 푸드뱅크·마켓의 물품 수급 조절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2개월마다
지정기탁배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물품의 배분 지역·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연중수시
긴급배분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별도	연중수시

※ 긴급배분은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에서 제외

- 전국지원센터는 당연 및 임의신고사업장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 협력 등), 수도권·비수도권·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배분
-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당연 및 임의신고사업장 구분, 기부식품등 이용대상자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 협력 등), 수도권·비수도권·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배분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가. 개요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연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
- 각 지원센터 간의 업무분담을 통해 교육의 중복,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

나. 교육의 종류

- 전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 * 소외계층의 자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교육에 추가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 권역별 워크숍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건의 사항 수렴 및 사업협력 체계 구축
 - 기타 전국지원센터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광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대상 교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 기타 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다. 행정사항

- 광역지원센터 사업자는 광역지원센터 종사자가 전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는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가 광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식품위생 교육, 자살예방 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협조해야 함
 -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교육,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 교육 훈련 대상 :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단, 보조인력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 제외)
 - ※ 전국지원센터는 종사자가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지원센터의 교육 일정 등을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공지사항에 공지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등 권장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가. 평가 근거 및 목적

- 평가 근거 :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 평가 목적 :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실시

나. 평가 개요

-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평가 대상 :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 평가 주기 : 3년
- 평가 내용 :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인력 현황,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등
- 평가 방법 :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 평가의 방법으로 실시

다. 행정사항

-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함
- 평가 결과의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의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도, 시·군·구,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

가. 평가 근거 및 목적

- 평가 근거 : 법 제3조의2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 평가 목적 :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나. 평가 개요

-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평가 대상 : 전국 또는 광역지원센터
- 평가 주기 : 3년
- 평가 내용 :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적,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등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가. 기부식품등 및 기부금품(후원금) 모집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기업,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의 기부 동참 유도
- 이용대상자의 균형적인 영양 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식품 확보 노력
- 기부모집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모집 활동 수행
- 식품 기부처에 대한 관리를 통한 지속적 기부 유도
- 언론, 신문, 잡지, 인터넷매체, SNS 등을 활용한 기부식품 모집 홍보

나. 영수증 발급

①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식품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자에게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부처(자)인지 확인후 실제 기부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에 맞게 작성하되, 기부자(기업,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따라 발급하며, 추가로 사업자는 영수증 목록을 작성하고 기부식품등 영수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하여 영수증 발급(발급불가 예시 : 일반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 ※ (붙임 8) 장부가액 증빙 양식
 - * 단, 본 양식은 예시이며, 기부자가 발급한 장부가액 증빙자료를 우선함
- 영수증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되,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기업, 개인사업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 ※ 기부가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제외(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기부자(기업, 개인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 가능

참고 : '기부식품등 영수증'의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는 내국법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 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따라 발급하며, 추가로 사업자는 영수증 목록을 작성하고 기부식품등 영수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 (붙임 10) 기부금 영수증
- 금전 이외의 물품 기부시에는 이를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영수증 발급(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

기부자	기부유형	식품 및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	非 식품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용품	후원금(현금)
식품,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내국법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		기부식품등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사업자)·개인			기부금 영수증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 운영 주체가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우 주무관청(설립허가기관)의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다. 기부식품등 제공

-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법 제6조)
-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 산출 방법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통계 - 기부물품통계자료 - 기부물품제공통계 메뉴에서 '제공일자' 1일 단위로 산출
 - 확인 방법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통해 1일 단위로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 단위로 확인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근무일이 3일 미만인 주는 제외
 - ※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한 경우 각 시설은 1인으로 인정
 - ※ 광역지원센터는 사업장별 제공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전국지원센터에 보고하고, 각 광역지원센터는 법적 제공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실시
- 기부식품등 제공 시 제공되는 물품의 특성(기부식품 소비기한 임박제품 등), 식품의 보관 및 취식방법, 소비기한, 판매·교환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
 -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안내하고, 안전한 취식을 위한 별도의 관리를 수행(안내문 배포 등)
- 기부식품등 제공시 이용자 가구원 수, 시설·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라. 기부물품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은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매뉴얼은 시스템 내부의 전자매뉴얼 또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는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용을 위한 개인별 계정발급을 전국지원센터에 신청 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변경 시 계정 중지 및 신규 발급 신청을 해야 함
 ※ FMS 온라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 후 신규 발급 신청 가능
- 기부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을 기부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 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내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 기부식품등이 물품 정보(바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사업자는 물품 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기부식품등의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해야 함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미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물품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상에 제공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지원센터의 사용권고 후에도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용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위반사항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FMS 사용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아이디 사용 중지 (15일)	아이디 사용 중지 (30일)	아이디 사용 중지 (영구)

- 지자체는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통계 메뉴를 통해서 지역 내 사업실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ID, PASSWORD 별도 제공(전국지원센터)

마.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5조)

-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 (붙임 12)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수증 등) 작성·보관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전년도 실적이 마감된 후 연 1회(매년 3월) 운영 기관 홈페이지 및 전국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등을 통해 공개
 -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 일자
 -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 일자
 -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하는지,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구분

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 운영 주체(법인 등)는 운영 주체와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계좌를 두어야 함
 - * (전용계좌) 사업장 명칭이 명시된 운영 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 운영 주체(법인 등)의 대표와 사업장 대표는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기부금을 기부식품등 사업장 운영비, 식품 구매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8

기부식품 관리

가.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해야 함
 - (붙임 13)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준수
- 「식품위생법」상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규정) 준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사업자는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의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처리해야 함

위해성 여부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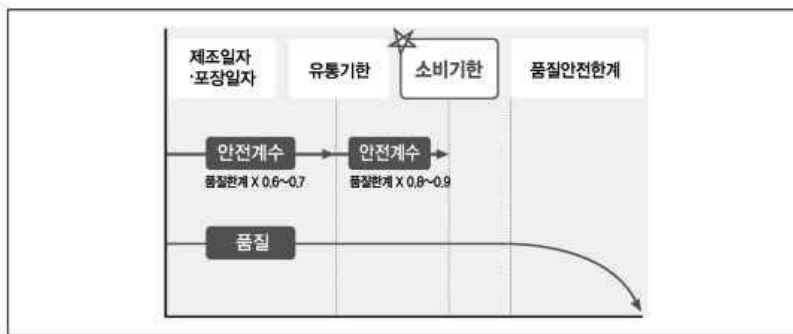
- 접수, 배분 과정의 바코드 입력 시 위해상품 내역이 있는 경우 차단 알림
- 위해상품 연계관리 화면의 상세내역을 확인 후 처리
- * 위해상품 차단 알림은 동일 바코드의 위해상품 등록내역을 식별하여 경고하는 기능으로, 해당 바코드의 모든 상품이 위해상품인 것은 아님 [즉, 생산 시기와 생산처(공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위해상품이 아님]

나. 기부식품의 소비기한 관리

■ 소비기한 관리 :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 준수(아래 표 참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안내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3. 1. 1.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 대상제품 :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
 - ※ 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인 우유류(우유 및 우유가공품)는 2031년부터 시행
-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 소비기한(use-by date)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 소비기한은 보관유통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정도에서 설정되므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내용은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자세한 보관방법은 [붙임13.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1) 모집 가능 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소비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 가능 기한을 준수
 - ※ 모집 가능 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
- (2) 배분 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소비기한 잔여일수
- 모집 가능 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다더라도, 배분 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소비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소비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예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즉시 배분
 - 신선식품(육가공류, 농산물) 및 제빵류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취식이 가능한 개인 및 시설·단체에 즉시 배분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

구분	식품군	모집기한		배분기한
		중앙/광역	기초	기초
제빵, 떡류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	3	3	즉시
제빵, 떡, 면	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	5	3	
유제품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육가공품 및 알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두부, 목,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기타농축수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제과 및 면류 등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레토르트 식품 등	30	25	20
육가공품류	육포, 쥐포			
유제품류 등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음료류	플라스틱, 병음료(커피, 차)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간식류 등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냉동식품류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40	35	30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유지류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장류 및 소스류1	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장류 및 소스류2	고추장, 된장, 물엿, 울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분말류1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분말류2	설탕, 소금			
통조림류	햄, 골뱅이, 참치 등			

- 1) 음영처리된 식품군은 **주요 관심대상 식품군**으로, 즉시 배분(당일~익일)을 원칙으로 함. 식품군 내에서 별도 취급되어야 하는 식품(예: 반숙란, 두부, 목 등 개별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현장 담당자의 관능검사가 필수적임**(유통/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경우 포함).
- 2) 우유 및 우유가공품은 2031년까지 유통기한 표기가 유지됨.

- 보관중인 기부식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 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 기한 이내라도 관능검사* 결과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식품은 폐기 조치

* 관능검사 : 인간의 오감에 의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제품 검사

다. 식품 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 예방
 - 시·군·구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 상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 기부식품 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 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 ※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사업자는 이용자로 선정된 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취지와 지원되는 물품의 성격(기부식품, 소비기간 임박식품)에 대하여 안내
 - 사업자는 기부식품 제공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보관 및 취식 시 주의사항과 소비기한 내 식품을 취식하도록 안내
 - 식품 및 생활용품 보관시 생활용품으로 인한 식품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보관
- 식품사고 사후관리
 - 식품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 경위, 피해 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 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신속히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 제공 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인 경우

위해식품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참고 :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기부생활용품 관리

가.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생활용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해야 함
 - (붙임 14)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준수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기부식품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

나. 기부생활용품의 사용기한 관리

- 사용기한 관리 :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 (1) 모집 가능 기한 : 사업자가 기부생활용품을 모집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사용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생활용품을 모집하되, 모집 가능 기한을 준수
 - ※ 모집 가능 기한에 맞지 않은 생활용품 기부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
 - (2) 배분 기한 :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모집 가능 기한 내 생활용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 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사용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사용기한 잔여일수 고지
 -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사용이 어려운 생활용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즉시 배분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구 분	종 류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 기한	
		개인	사회복지시설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4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 사용기한이 표기된 경우, **모집 가능기한은 최소 90일 이전으로** 하며 배분기한을 준수

※ 사용기한이 표기되지 아니한 물품은 반드시 관능검사 필요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생활용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 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 기한 이내라도 생활용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생활용품은 폐기 조치

다. 기부생활용품 이용 사고의 예방 및 관리

- 기부생활용품 이용 사고 사전 예방
 - 사업자는 기부 생활용품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기부생활용품 이용 사고 사후관리
 - 기부생활용품 이용과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기부생활용품 이용 관련 사고를 조사하여 사고 경위, 피해 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기부생활용품 이용 관련 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신속히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생활용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가. 인력 확보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및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전담인력,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전담인력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되어있고,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주 40시간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
 - 보조인력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투여되는 전담인력 이외의 인원
 - ※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긴급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 보조인력의 범위 : 겸직인력,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시니어 푸드뱅크 매니저 등
 -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 3개월 이상 전담인력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지자체는 운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요원·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을 우선 배치
 -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병무청 수요조사 시 적극적으로 인력 확보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복지요원·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병무청 요청)
-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관리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적십자사 등 기타 민간기관 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병무청 요청)

나. 인력관리

- 인건비 지원기준
 - 전담인력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원센터,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준수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도 참고
- 교육 훈련
 -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 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살예방 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 교육훈련과 대상 :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 단, 보조인력의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은 제외함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 교육 등 교육 훈련 권장
 - ※ 회계, 행정실무,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 건강진단

- 기부식품을 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종사자 및 보조인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은 건강진단서를 보관해야 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건강진단 항목 및 검사주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항목 등)」에 준하여 실시해야함(식품위생법 제 40조 제1항)
 - 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검사주기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종사할 수 없음(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 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시키지 못함(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 종사자 인권보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폭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 자료실 내 「사회복지종사자 폭력예방 매뉴얼(보건복지부, 2017)」을 참고

다. 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

- 보조금 등의 회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 시설·설비 등의 관리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신고유형에 따른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을 실태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함
 - ※ (붙임 1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 (붙임 17)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
- 운영위원회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라. 기타 사항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너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 가능
 - 복지할인 내용 : 사회복지시설(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 20% 감액
 - 신청 방법 :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123), 관할 지사, 지점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전기요금영수증, 신고확인증
 - ※ (붙임 2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안내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가. 철회·폐업 신고(법 제3조제3항)

-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을 신고

나. 신고 절차

- ① 사업자는 철회·폐업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고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신고확인증,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등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철회·폐업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해야 함
 - ※ 관할 세무서장이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철회·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철회·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다. 추가 조치사항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 장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한 후, 관할 지역의 신고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폐업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가. 지정 취소 요건(법 제3조의2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정기적인 평가 결과,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폐업 절차(시행규칙 제3조의3)

- ①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하려는 지원센터는 폐업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 (붙임 15) 철회·폐업 신고서 참고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②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등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서를 수리

다. 추가 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지원센터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지원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 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회수하여 새로이 지정된 지원센터에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 장비, 공공요금·차량 유지비 등 경비 지원
 - ※ 지원센터 및 신고사업자에게 인건비·경비·장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또는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노후 장비 우선 지원)

나. 식품등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법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반한 때
 -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
 - ※ (붙임 1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
 - ※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 지자체와 광역지원센터는 신고한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지자체는 사업자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전국지원센터는 광역지원센터와 기초푸드뱅크·마켓이 기부식품등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배분, 이용자 선정 등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광역 담당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 기부식품등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배분 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되는지,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는지, 배분 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등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2개 이상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 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 임의신고사업자는 매년 제공한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신고사업자로 신고해야 함
- 기부식품등 제공자의 경우에도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기부식품등의 안전취급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부식품등 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법 제11조제1항)

- 사유
 - 제3조제1항(임의신고) 또는 제2항(당연신고)에 따라 신고 한 사업자가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공자 및 사업자가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 : 위반 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

나. 사업 정지명령 및 사업장 폐쇄명령(법 제11조제2항)

- 사유
 -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 사업자가 제6조제1항(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장 폐쇄 시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해야 함
-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별표5)
 -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다.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업자가 신고기준에 미달)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다. 사업장 폐쇄(법 제11조제4항)

- 사유 : 사업자가 사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폐쇄조치의 내용
 -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 표시물의 제거·삭제
 -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 ※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 요건
 - 봉인 또는 게시문 부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때
 -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를 요청하는 때

라. 벌칙 및 양벌규정(법 제12조, 제13조)

- 제6조 제1항(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상제공 위반행위(제6조제1항)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마. 과태료(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별표6)

- 사유
 - 제3조제2항(당연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 6)
 -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III 기 타

1. 붙임자료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현황

1. 붙임자료

-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붙임 2) 사업계획서
- (붙임 3) 신고확인증
- (붙임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붙임 5)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 (붙임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시설·단체)
- (붙임 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요청서
- (붙임 8) 장부가액 증빙 양식
- (붙임 9) 기부식품등 영수증
- (붙임 10) 기부금 영수증
- (붙임 11) 기부식품등(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 (붙임 12)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 (붙임 13)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 (붙임 14)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 (붙임 15) 철회·폐업 신고서
- (붙임 1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
- (붙임 17)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
- (붙임 18)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대장
- (붙임 19) 차량운행 및 정비 관리 대장
- (붙임 2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 (붙임 2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붙임 22)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 (붙임 23) 위생점검일지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7.)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당연[]		
	소재지	면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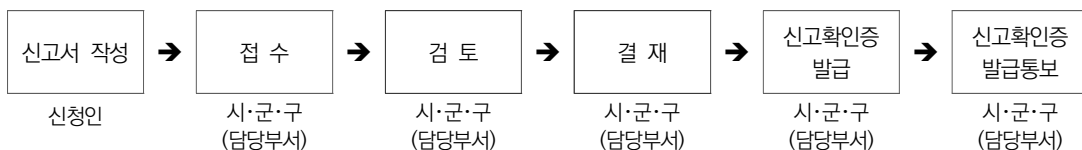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붙임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1. 기관소개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조직체계

2.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
-

3. 설치·운영 사업계획(개조식으로 기술)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및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 일정
- 기대효과

4. 사업예산 계획

5.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붙임 3 신고확인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27.>

(앞쪽)

제 호

신 고 확 인 증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사업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 면적 :

신고의 종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붙임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27.>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신청 내용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보관창고 면적 사무실 (m ²), 창고 (m ²) 소유형태 소유(), 임대()	운반차량 (t) (대), (t) (대)		
	냉장고 총 0 [(0) (대), (0) (대)]	냉동고 총 0 [(0) (대), (0) (대)]		
	인력 총 명(전담인력 명, 보조인력 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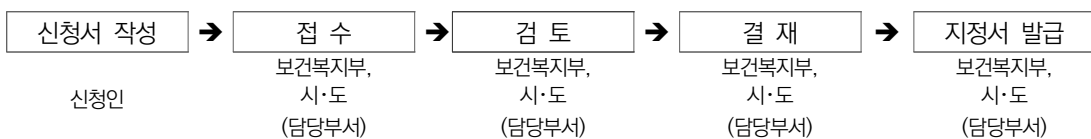
신고인(사업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사업자) 제출서류	1.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2. 2.>

(앞 쪽)

제 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 지정 내용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사업장 명칭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붙임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시설·단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주 소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로부터 제공받은 기부식품 또는 생활품을 판매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사용할 경우 기부식품등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개인이력(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 이력)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서비스 이용자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행정기관은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제공내용 : 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상의 개인정보
 - 수집정보 활용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3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에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자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 신청	주민등록번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

*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 세부자료 1부.

위와 같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귀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시설·단체)			
시설(단체)명			대 표 자 명
사업자 번호			
주 소			
담 당 자 명	(직책)	(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 업 유 형	시설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복합노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증진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숙인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관 <input type="checkbox"/> 지역자활센터 <input type="checkbox"/> 다함께 돌봄센터	<input type="checkbox"/> 결핵·한센시설 <input type="checkbox"/> 성매매피해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성폭력피해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건강가정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종교·사회단체 등
	운영유형	<input type="checkbox"/> 이용시설	<input type="checkbox"/> 생활시설
이 용 횟 수	<input type="checkbox"/> 정기 <input type="checkbox"/> 비정기 - 주()회 - 월()회	이 용 프 로 그 램 및 이용규모	·프로그램명() ·이용규모()명
선 호 품 목	<input type="checkbox"/> 주식류(쌀, 라면 등) <input type="checkbox"/> 부식류(김치, 반찬류) <input type="checkbox"/> 간식류(음료수, 과자류) <input type="checkbox"/> 재료(식용유, 장류) <input type="checkbox"/> 생활용품(세제류 등 위생용품 등)		
기 부 식 품 등 이 용 목 적			
관 련 증 빙 자 료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제출		
<p>본인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로부터 제공받은 기부식품 또는 기부생활용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유통기한 내 소비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p>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시·군·구청장 귀하			

부 9

기부식품등 영수증

NO. 2024-00000001

기부식품등 영수증

기부식품등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공경, 투명하게 제공되어 활용됩니다.

기 부 금 품 : 일금	원정	(부)
기 부 내 역 :	(수량 :	개)
기 부 일 자 : 2024.00.00	(건수 :)
기 부 자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구상인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 기부식품(정수기)에 전원을 붙인서명시행령 제55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바 또는 필요경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빌딩 00층

2024년 00월 00일

기부식품등 수령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000 (인)

* 전국푸드뱅크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201호

전화 : 02-2077-3985~6

팩스 : 02-718-338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붙임 10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일련번호	
------	--

기부금 영수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점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 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코드	구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1. ㉓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462

2. ㉔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㉕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순금) 및 세액공제 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4. ㉖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기"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그 밖의 기부금	Max(장부가액, 시가)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3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I. 목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II. 기본방침**가. 모든 기부식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유통기한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식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조리식품은 반드시 가열 후 섭취 안내

- 조리식품은 반드시 가열 후 섭취토록 안내하고 특히 여름철과 위해도가 높은 식품은 세심한 주의 요망

다.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라.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가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마. 폐기대상 식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식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식품 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갖추

III. 기부식품 관리 3대 원칙**가. 청결의 원칙**

- 1) 기부식품이 아무리 안전한 경우라도, 전달과정 및 보관 등 취급시에 청결을 등한시하게 되면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할 수 없음

2) 식품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청결」은

- 단순히 식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설비, 식품 취급자의 청결 등을 의미하며 특히, 식품취급자인 제공자 및 사업자 등 관계 종사자들의 청결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함

3) 기부식품을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질환(화농증 등) 또는 음식을 통하여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감염된 자
- 종사자 또는 그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와 보균자임이 판명된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자와 동거하거나 동일 직장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로서,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나. 신속의 원칙

1)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기부된 식품은 배급·취식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해당 보관조건에 따라 냉장·냉동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함

2)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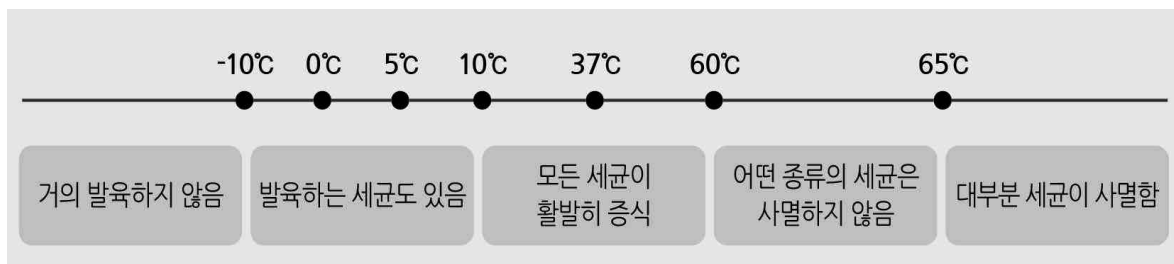
- 신선식품, 조리된 식품은 냉장·냉동 보관 후 접수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해야 하며, 이용자가 식품을 상온에 보관할 경우 2시간 이내 섭취하거나 재가열 후 섭취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다. 냉장 또는 가열의 원칙

1) 식중독균은 그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 범위에서 증식이 활발해지며, 5℃에서부터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 내에서 증식이 가능함

2) 냉장·냉동 식품은 정해진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며, 가열 섭취가 필요한 식품은 설정된 기준에 따라 충분히 가열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 시 안내하여야 함

온도가 식중독균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IV. 일반적인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 1)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식용으로서의 적합여부 판단
- 2) 식품 표시사항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인쇄 정보를 활용
 - 제조년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식품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식품 확인
 - 가공식품 등 의무 표시 대상이나 한글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식품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시사항이 훼손된 식품 확인
 - 수입 또는 수출 식품의 한글 표시사항 부착 여부 확인

나. 관능검사

-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부된 식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2) 특히 쉽게 상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시식하여 안전성 검사
- 3) 식품별 관능검사 기준

① 냉동식품

구분	검수 방법
변색 확인	장기간 냉동 보관과 부주의한 관리로 식재료의 색상이 변색
이취 전이	장기간 냉동 보관 및 부주의한 관리로 이취가 생성
결빙 확인	냉동보관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빙 발생 및 식재료의 손상 초래
분리 확인	장기간의 냉동 보관과 부주의한 관리로 식재료의 분리 발생

② 가공식품

- 가공식품의 품질변화는 소비기한의 경과 유무 및 장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2주 정도로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의 경우에는 부패의 속도가 빨라 며칠 사이에 해당 제품을 먹을 수 없게 됨
 - 유통기간이 2, 3년씩 되는 제품의 경우(주로 캔류임)에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 내에 안전성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음.

식품의 종류	식별 요령
진공 포장된 제품 (햄, 소시지, 국수류 등)	• 포장지와 내용물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어야 하는 제품이 포장과 내용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미 이물질이 발생하여 포장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소비기한 이전 제품이라도 부패하였을 가능성이 큼
콩제품(두부류)	• 표면에 점액이 있고 겉면이 분홍빛을 띰. 특히, 부패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심함
포장된 국수류 (냉면, 쫄면, 가는 국수류 등)	• 내용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내용물간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상한 상태임

식품의 종류	식별 요령
음료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트병에 들어있는 경우 흔들어 햇빛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단, 제조상 자체 액기스(내용물)가 들어있는 종류는 제외(오렌지주스, 파인애플주스, 토마토 주스 등 주로 페트병 제품보다 고가격 제품들임)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풀어 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함 - 찌그러진 부분으로 공기 등 이물질 유입 가능
우유, 요구르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남
수산가공품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이 서로 엉겨서 덩어리져 있는 것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함
초콜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래의 갈색에서 색이 흐려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흰 빛깔의 다른 느낌을 주며, 대체로 원래보다 심하게 건조되어 있음
어묵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지와 내용물간에 가는 실 같은 이물질이 발생되어 있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생겨있음
유탕처리제품 (도너츠, 튀김만두, 튀긴 과자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름에 튀긴 가공품류의 색이 너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부패된 기름에 튀긴 것으로 식중독 및 노화의 원인이 됨
냉동가공품 (돈까스, 만두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이 서로 엉겨있는 것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된 것임
탄수화물가공제품 (빵류, 떡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한부분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 전량 폐기토록 함 이미 제품 전체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는 상태이므로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는 것은 위험함

③ 농·축·수산물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양 호	보 통	불 량
가금육 (닭고기류)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함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 색을 띠
식 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띄고 탄력이 있음.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옅은 분홍색을 띠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음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음
어류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음	냄새가 비릿해짐	물에 뜸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여종 특유의 색깔과 상당한 광택을 띠	탄력성이 조금 떨어짐	몸체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함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음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함	눈은 들어가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떨어져 나가고 있음
	아가미는 선홍색임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음	아가미는 암녹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남
	배 부분을 누르면 탱탱함	복부가 약간 무르기 시작함	복부는 주저앉고, 물렸음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 내기 어려움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함	살은 뿌옇고 혼탁함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양 호	보 통	불 량
계란	껍질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광택이 없음	-	깨보면 난백이 퍼짐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음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남
	전등빛에 비추면 밝고 투명함	-	전등빛에 비추면 어둡게 보임
채소류	광택이 있고, 싱싱함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잘라 내면 싱싱함	잎이 시들고 탄력이 없음
콩나물, 숙주류	조식이 단단함	-	수분이 너무 많고, 내용물을 눌러 보았을 때 조식이 쉽게 문드러짐

④ 건식품류

- 건고추류는 기본적으로 기부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가을에 수확하여 해를 넘길 경우 고추 안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제품은 암 발생의 원인이 됨
 - 건고추류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그해 생산된 안전한 제품은 기부받기가 어려움
- 말린 제품류(건어물류, 육포, 건과일류 등)
 - 원래의 색깔보다 진해져 탁한 색깔을 띠거나, 조식이 물러졌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부패되고 있는 상태임

다. 정밀검사 : 이·화학적 검사

- 관능검사를 통해서도 식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부량이 많은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 후 활용
- 정밀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

참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	
- 유제품류	우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우유가 들어간 음료류 등
- 생선가공품류	각종 생선 캔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 육가공품류	햄, 소시지, 족발 등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식품	
- 탄수화물류	떡류, 빵류, 과자류, 사탕류 등
- 건조식품류	마른멸치, 미역, 오징어 등
- 장 류	고추장, 된장, 간장류
특히 주의하여야 할 식품	
- 조리식품 중 샐러드류, 달걀구이, 자른 햄과 소시지, 생선회 등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름철에는 이런 식품류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식품류의 경우도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다량 섭취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V. 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온도 기준

구분	온도
실온	1~35℃
상온	15~25℃
냉장	0~10℃
냉동	-18℃ 이하
차고 어두운 곳 / 냉암소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빛이 차단된 장소

나. 식품의 보관기준

1) 가공식품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에 따름
- 아래의 보존 및 유통 온도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은 규정된 온도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함

식품의 종류	보존 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우유류·가공유류·산양유·버터유·농축유류·유청류의 살균제품 • 두부 및 목류(밀봉 포장한 두부, 목류는 제외) • 물로 세척한 달걀 	냉장(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념젓갈류 • 가공두부(멸균제품 또는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제품 제외) • 두유류 중 살균제품(pH4.6 이하의 살균제품 제외) • 어육가공품류(멸균제품 또는 기타 어육가공품 중 굵거나 튀겨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제품 제외) • 알가공품(액란제품 제외) • 발효유류, 치즈류, 버터류, 생식용 꿀 • 원료육 및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 수산물 •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 제외) •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 중 식육, 기타식육 또는 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제품 	냉장(0~10℃) 또는 냉동(-18℃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기타식육 	냉장(-2~10℃) 또는 냉동(-18℃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 분쇄가공육제품 	냉장(-2~5℃) 또는 냉동(-18℃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에 한함) • 훈제연어 • 알가공품(액란제품에 한함) 	냉장(0~5℃) 또는 냉동(-18℃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착올리브유용 올리브과육 등 변질되기 쉬운 원료 • 얼음류 	-10℃ 이하

2) 농산물

- 건조하면서도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
- 3℃이하의 냉장보관은 냉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
- 세척 채소는 반드시 냉장보관 하여야 하며, 세척 채소와 비세척 채소는 분리보관
- 포장지에 표기되어있는 보관 및 유통온도(실온, 냉장, 냉동 등)를 준수
- 별도의 보관 및 유통온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관능검사를 통해 보관온도 및 기간을 판단해야 하며, 아래의 최적보관기간(최장보관기간)을 참고할 수 있음

품명	보존 온도(℃)	보관기간	비고
쌀, 보리쌀	15~25	3개월	곰팡이 발생 전까지 사용 가능
앞채류	4~6	1일	씻은 상태
	7	7일	씻지 않은 상태
	15~26	3일	씻지 않은 상태
근채류	4~6	2일	
	15~25	3개월	무 : 보관일 7일
과채류	7~10	5일	
	15~25	3일	
감자류, 뿌리채소류	20	(7~30일)	씻지 않은 상태

※ 출처 : 식재료 관리 및 위생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3) 수산물

- 어·패류는 다른 식품과 분리하여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
- 포장지에 표기되어있는 보관 및 유통온도(실온, 냉장, 냉동 등)를 준수
- 별도의 보관 및 유통온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관능검사를 통해 보관온도 및 기간을 판단해야 하며, 아래의 최적보관기간(최장보관기간)을 참고할 수 있음

품명	보존 온도(℃)		보관기간		비고
	냉장	냉동	냉장	냉동	
생선류	4	-12~-18	1~2일	15일~1개월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
패류	4	-12~-18	1~2일	15일~1개월	
게, 새우		-12~-18		(3~4개월)	

※ 출처 : 식재료 관리 및 위생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4) 축산물

- 육류는 도살된 후부터 식용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
- 육류를 3~4일 정도 저장하고자 할 때는 4℃ 이하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장기간 저장할 때에는 냉동보관
- 포장지에 표기되어있는 보관 및 유통온도(실온, 냉장, 냉동 등)를 준수
- 별도의 보관 및 유통온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관능검사를 통해 보관온도 및 기간을 판단해야 하며, 아래의 최적보관기간(최장보관기간)을 참고할 수 있음

품명	보존 온도(℃)		보관기간		비고
	냉장	냉동	냉장	냉동	
쇠고기	4	-12-18	3~5일	1~3개월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
돼지고기	4	-12-18	2~3일	15일~1개월	
닭고기	4	-12-18	2~3일	15일~1개월	
계란	4	-12-18	7일~2주	15일~1개월	씻지 않고 냉장상태로 보관

※ 출처 : 식재료 관리 및 위생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다. 기부식품의 운송·보관요령

1) 일반원칙

- 냉동·냉장 유통 또는 보관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식품과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교차오염 및 습기로 인한 변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은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공산품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2) 냉장·냉동고의 관리

- 내부 온도는 냉장 0~10℃, 냉동 -18℃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부 온도기록 장치를 통해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단, 문의 개폐를 고려하여 냉장 0~5℃, 냉동 -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도측정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1일 2회(오전, 오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냉장·냉동고 온도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는 용량의 70%이하로 보관하고, 문의 개폐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는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으로부터 유출된 침출액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시설의 청소는 모든 식품을 작업장내에서 완전히 반출하거나 청소애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바닥 및 기구류 등은 가능한 건조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 냉동·냉장차량의 관리

- 관리는 냉장고의 원칙에 준하여 실시함
- 운반차량은 냉장 0~10℃, 냉동 -18℃ 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온도기록 장치를 통해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온도측정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차량 운행 정비 관리 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운송 전 차량관리
 - 식품 적재고 바닥의 청결상태 확인
 - 냉장·냉동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후 상차 전 예냉을 실시
- 운송 후 차량관리
 - 냉장·냉동 작동장치를 끈 후, 적재고 바닥에 이물, 물기, 혈액 등이 잔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내부청소 실시
 - 차량 내부에 물기가 많은 경우 결로현상에 의해 냉동능력이 떨어지고 냉동기의 수명이 단축되므로, 내부 환기를 시켜 차 내부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

VI. 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소분 가능 품목

1)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2) 단순 처리한 자연산물

- ‘자연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는 등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3) 최소판매단위 가공식품

- 최소판매단위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소한의 구매 단위를 의미
- 최소판매단위는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함
- 외포장에 표시사항이 포기된 대용량 제품의 경우 날개 제품에도 표시사항이 각각 표기되어 있다면 날개 단위로 소분 가능

나. 소분 불가능 품목

1) 가공식품

- 식품 고유의 성상이 변화하도록 가공, 조리과정을 거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및 벌꿀(자가채취하는 영업자에 한해서만 소분 가능)과 같이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 후 소분 가능한 품목
-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라도 소분이 금지된 품목
 -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2) 최소판매단위가 아닌 가공식품

- 최소판매단위인 외포장에 표시사항이 표기된 대용량 제품일지라도 날개 제품에 표시사항이 각각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날개 단위로 소분 불가능

3) 축산물

- 축산물은 식품 소분업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소분이 불가

다. 위생관리

1) 종사자 복장

- 모자, 마스크, 장갑, 위생복 등 올바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

2) 시설·설비·도구

- 소분장소는 별도의 구역을 마련하고,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
- 소분 전후로 청소 및 소독을 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소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 포장용기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용기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에 사용 가능한 규격을 사용하도록 함

다. 공정관리

- 1) 소분은 신속하게 실시하여 공기 중 낙하균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 2) 밀봉 포장을 통해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식품으로 오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함
- 3) 소분한 식품의 경우 소분 전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관 관리되어야 함
- 4) 소분 전 식품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다면, 소분 후 식품명과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함
 - 필수 표시사항 : 식품명, 원산지, 소비기한/생산일/포장일/산란일/도정일, 보관방법

VII. 행정사항

- 가.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나.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는 기부식품의 위생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14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I. 목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활용품 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된 생활용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생활용품의 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II.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생활용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사용기한 등에 관계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사용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 특히, 구강 내로 흡수되는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와 가정용 살충제 등 의약외품은 주의 요망

다. 기부생활용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교육을 수료해야함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라. 폐기대상 생활용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생활용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생활용품 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갖춤

III. 일반적인 생활용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 1) 사용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 2)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사용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기부된 모든 생활용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2) 특히 사용기한이 임박한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사용하여 안전성 검사

IV. 기부생활용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생활용품의 보관기준

- 생활용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 준수

나. 생활용품의 운송·보관요령

- 일반원칙
 -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검수가 끝난 물품은 바닥에서 10cm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물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VI. 행정사항

- 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나.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정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15 철회·폐업 신고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7.>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확인증 분실사유(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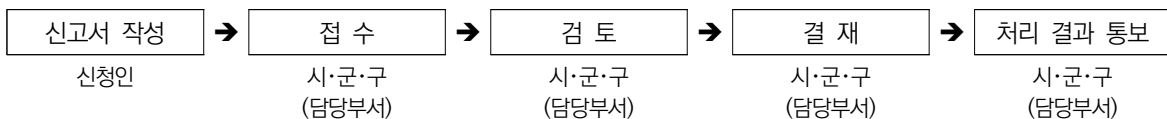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

□ 목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실태를 점검

□ 기본사항

푸드뱅크·마켓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FAX	담당자(H·P)
사업장 신고 구분(임의, 당연)	신고일자/변경사항		비 고	

□ 신고유형에 따른 사업장의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

- 임의신고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 결과
1	보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관창고는 시건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 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함 •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업무 용도 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 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 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 여야 함 	
2	운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 주체) 명의의 운반 차량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 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3	냉장(냉동)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양도증명서 등 기 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동·냉동진열장, 계산대,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당연신고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관창고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획 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확인 	
2	운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3	냉장(냉동)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4	인력(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고, 업무분장표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만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 등의 서류를 확인 	
5	인력(보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동·냉동진열장, 계산대,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영수증,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 비치 작성 및 보관 - 행정관리문서로 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에 따라 발급하며,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기부식품사업으로 사용된 물품은 반드시 FMS에 입력하여 관리 하여야 함 * 후원금 모집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실태 점검(지자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13,14) 기부식품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 식품등 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대책과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 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및 사업장 신고 변경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무상 제공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사업장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신고사업장에서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신고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운영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붙임 17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

□ 목 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

□ 기본사항

운영주체 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FAX	담당자(H·P)
사업장 신고 구분(임의, 당연)		신고일자/변경사항	비 고	

□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전국지원센터는 990제곱미터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보관창고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 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를 확인 	
2	운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3	냉장 (냉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이 각각 전국지원센터는 3,000리터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1,000리터 이상이어야 함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4	인력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전국지원센터는 8인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있고, 업무분장표에 관련 업무만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 등의 서류를 확인 	
5	인력 (보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전국, 광역 공통)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무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외의 추가인력은 모두 포함됨 사회복지무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사업자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교육지원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역적인 특수성, 식품등의 양적·질적 지원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및 교육 등 지원기준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수립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및 신규·전환 시 현장점검 지원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실태조사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영수증,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 비치 작성 및 보관 행정관리문서로 기부식품등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등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에 따라 발급하며,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사용된 물품은 반드시 FMS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붙임 13,14)기부식품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식품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대책과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 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및 지원센터 신고 변경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무상 제공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지원센터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운영 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붙임 18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대장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월)						
기준	냉장 0~10℃ 냉동 -18℃ 이하		주기	2회/일	방법	시설 외부 온도계 육안 점검 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
일자	냉장고(℃)		냉동고(℃)		특이사항	점검자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 2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135-7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영업처 영업운영팀 차장 강미숙

http://www.kepco.co.kr FAX 02-3456-4598
☎ 021-3456-4571 beam@kepco.co.kr

문서번호 영업(운)82102-54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수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참조 복지지원운영실장

시행일 2009. 9.24.

121-805

제목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복지할인 적용 요청』에 대한 회신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귀 공문 푸드뱅크운영과305-778(2009.08.18)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당사 예하사업소에 상기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할인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② 전기요금영수증
- ③ 사회복지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신고증. 끝.

한국전력공사



붙임 2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024년 (지자체명)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관리번호 :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사업비

(단위 : 원, %)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기타						

2024년 월 일

제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직인)

- 담당자 : 직위 성명
- 연락처 : 전화
- E-mail
- 주소 : (우편번호)

1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	------------------------------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사 업 명			
사업기간	2024. 1. 1. ~ 12. 31.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원	보 조 금	원
		(기타재원)	원
사업목적	○		
추진실적	○		
사업성과	○		
성과 활용계획	○		
문제점 및 건의	○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진 계획	추진 실적	비고
	○	○	
	○	○	
	○	○	
	○	○	
	○	○	

3 사업추진성과

○

4 자체평가

○

5 개선 및 지적사항

○

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7 미조치 사유

○

2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기타재원)						

※ 보조금 교부 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 보조금 집행현황

○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인건비	계				
운영비	계				
사업비	계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지출 일자	지출액	비목	내역	지급처	비 고

※ 인건비 및 운영비 항목은 제외

③ 기타재원 집행현황

○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인건비	계				
운영비	계				
사업비	계				

○ 기타재원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지출 일자	지출액	비목	내역	지급처	비 고

붙임 22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구분	주요 내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의 활성화 자문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 식품등 기부처 개발 및 기부식품등 이용의 효과성 증대 - 기부식품등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각종 협의·조정
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자문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자문 - 지역사회 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운영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자문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자문) 선정은 지자체 관계공무원, 지역 내 유관시설 및 단체장(또는 임원, 시설장), 학계 인사, 지역사회 내 기부처 및 잠재기부자 등을 포함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장은 구성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정 - 위원 수 : 5인 내외(최소 3인 이상)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위원회 개최 운영 :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 수시회의는 개최 안건 등이 발생 경우 개최토록 함 - 위원회 운영경비는 자체 사업계획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 집행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 개최에 관한 내용(개최일시, 참석자 명 및 서명날인, 회의안건 및 회의 등)을 회의록 일지 등을 통해 기록보관함

***회의록양식(예시)**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지난 회의 결과			
회의안건			
회의내용			
기타사항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p>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p>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p>	<p>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p>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31.]</p> <p>[중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7. 1. 31.>]</p> <p>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2019. 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p>[제2조에서 이동 <2017. 1. 31.>]</p>	<p>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여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9. 27.></p>
<p>제3조(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p>	<p>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 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 1. 31.></p>	<p>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p> <p>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p>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7.></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p> <p>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7.></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p>		<p>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7. 2. 2.]</p>
<p>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p>		<p>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2. 2.]</p> <p>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p> <p>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 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2. 3.]</p>		<p>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p> <p>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17. 2. 2.]</p>
<p>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2. 3.></p> <p>1.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p> <p>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p> <p>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 2. 3.]</p>	<p>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p> <p>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p> <p>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2019. 2. 19.></p>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2019. 2. 19.></p>	<p>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2. 2.></p>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p>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p>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2019. 2. 19., 2019.7.2.></p> <p>⑥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2019. 2. 19.,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31.>[제목개정 2017. 1. 31.]</p> <p>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p> <p>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p>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제4조의4 삭제 <2018. 12. 18.>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7. 2. 2.>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p>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p>	<p>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목개정 2017. 1. 31.]</p>	
<p>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삭제 <2016. 2. 3.>[제목개정 2016. 2. 3.]</p>	<p>제6조 삭제 <2017. 1. 31.></p>	<p>제6조 삭제 <2018. 12. 28.></p>
<p>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p>	<p>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1. 31.]</p> <p>제7조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본조 신설 2014. 8. 6.][중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 8. 6.>]</p>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2. 인력 현황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31.][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7. 1. 31.>]</p>	
	<p>제7조의4 삭제 <2019. 2. 19.></p>	
	<p>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31.]</p>	
<p>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인 경우 <p>②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p>	<p>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 2. 19.]</p>	
<p>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p>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p>		
<p>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p>		
<p>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p>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제11조(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 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2019. 4. 23.></p> <p>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2019.4.23.></p> <p>⑦ 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6. 2. 3.></p> <p>⑧ 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p>		
<p>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4.23.,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7.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p> <p>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p> <p>③ 삭제 <2018. 3. 27.></p> <p>④ 삭제 <2018. 3. 27.></p> <p>⑤ 삭제 <2018. 3. 27.></p>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9.>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8. 기타	그 밖에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9.>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9.>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7. 1. 31.>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 시설	가. 사무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다.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8명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2명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7. 1. 31.>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다.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2.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 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 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 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7.>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당연[]		
	소재지	면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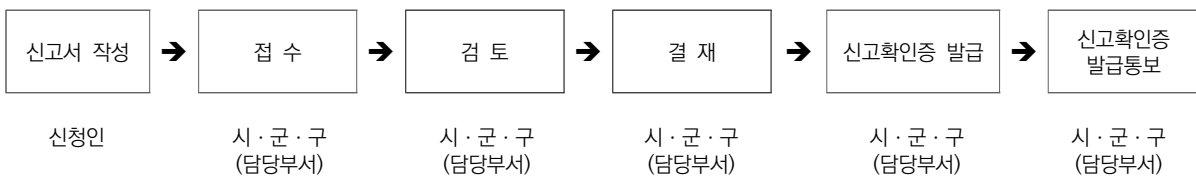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27.>

(앞 쪽)

제 호

신 고 확 인 증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사업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 면적 :

신고의 종류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7.>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확인증 분실사유(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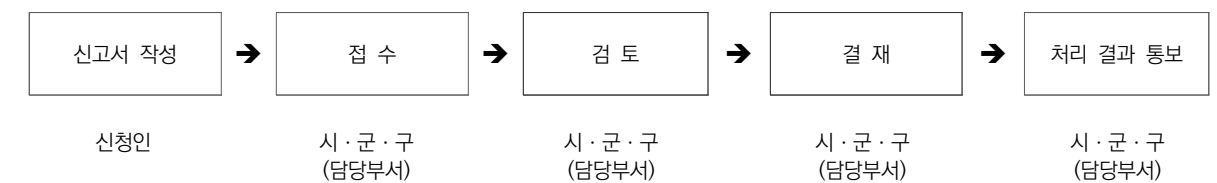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2. 2.>

(앞 쪽)

제 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 지정 내용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사업장 명칭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2.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기부식품등지 원센터	지정 내용 전국[]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지정서 분실사유(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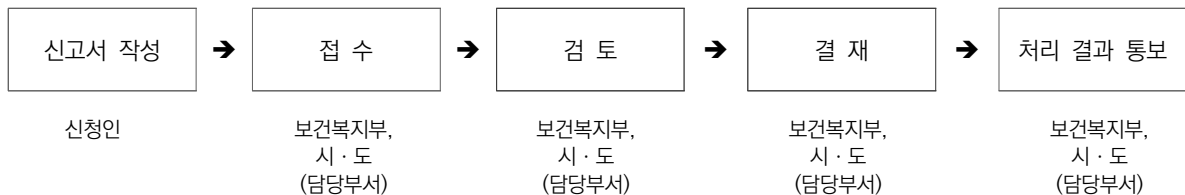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호, 2022. 1.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도, 시·군·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2호, 2022. 1.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구분	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지정 신고관리	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업무시설	2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8	+1
			교육이수	1	+1
			근무여건	6	
계				30	+5
운영 성과	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4	
			사업장지원	3	
			운영위원회	3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5	
			식품사고 관리(전국: 안전관리 포함)	3	
	모집/이관	기부식품등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자(처) 관리	4	
			기부식품등 조정·이관	4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행정문서 관리	3	
			정보공개 관리	2	
			예산관리	3	
계				40	
사업 성과	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성과 제고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운영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지원 만족도(광역→전국평가)	3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2	
			전국지원센터 고유역할 및 활동	5	
계				30	
총계				100점(+5)	

2.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구분	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지원센터 신고	1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업무시설	2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6	+1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교육이수	3	+1	
			근무여건	4		
계				30	+5	
운영 성과	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4		
			사업 교류협력 활동	3		
			운영위원회	3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식품사고 관리	1		
	모집/이관	기부식품등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자(처) 관리	4		
			기부식품등 이관 관리	4		
			사업장점검	3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행정문서 관리	2		
			정보공개 관리	1		
			예산관리	3		
계				40		
사업 성과	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성과 제고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배분(이관) 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2/2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운영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지원 만족도(기초→광역평가)	5	
				행정지원 만족도(전국→광역평가)	3	
광역지원센터 역할/임무 (교육운영지원)		2				
계				30		
총계				100점(+5)		

[별표 2]

사업장 평가지표(제4조제2항 관련)

1.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구분	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사업장 신고	1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4	+1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교육이수	4	+1	
			근무여건	5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역할기능활동의 적정성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3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계				34	+5/-15
	운영 성과	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운영위원회				4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식품사고 관리	1		
모집/ 배분		기부식품등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자(처) 관리	2		
			배분/이용관리	6		
			이용자 관리	6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행정문서 관리	2		
			정보공개 관리	1		
			예산관리	3		
		지자체 지원	1			
계				46		
사업 성과	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성과 제고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배분(이관, 제공)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계				20		
총계				100점(+5/-15)		

2.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구분	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사업장 신고 *당연미전환 -3점	1	-3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1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5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3	+1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1	+1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교육이수	4	+1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역할기능활동의 적정성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3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계				34	+5/-18
운영 성과	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운영위원회	4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식품사고 관리	1	
	모집/배분	기부식품등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자(처) 관리	2	
			배분/이용관리	6	
			이용자 관리	6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행정문서 관리	2	
			정보공개 관리	1	
			예산관리	3	
		지자체 지원	1		
계				46	
사업 성과	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성과 제고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배분(이관, 제공)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계				20	
총계				100점(+5/-18)	

3.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구분	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사업장 신고	1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2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4	+1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교육이수	4	+1
			근무여건	5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역할기능활동의 적정성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계				34
운영 성과	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운영위원회	4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포함)	6	
			식품사고 관리	1	
	모집/ 배분	기부식품등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자(처) 관리	2	
			배분/이용관리	6	
			이용자 관리	6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행정문서 관리	2	
			정보공개 관리	1	
			예산관리	3	
지자체 지원			1		
계				46	
사업 성과	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성과 제고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배분(이관, 제공)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계				20	
총계				100점(+5/-15)	

4.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구분	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사업장 신고 *당연 미전환 -3점	1	-3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1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2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5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3	+1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1	+1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교육이수	4	+1
			근무여건	5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역할기능활동의 적정성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계				34	+5/-18
운영 성과	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운영위원회	4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식품사고 관리	1	
	모집/배분	기부식품등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자(처) 관리	2	
			배분/이용관리	6	
			이용자 관리	6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행정문서 관리	2	
			정보공개 관리	1	
			예산관리	3	
지자체 지원			1		
계				46	
사업 성과	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성과 제고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배분(이관, 제공)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계				20	
총계				100점(+5/-18)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푸드뱅크·마켓) 현황

- 푸드뱅크
- 푸드마켓

푸드뱅크

(2023.12월 기준)

구분	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전국	푸드뱅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2층	02)2077-3969	
	중앙물류센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청로 745-86 (응암리 409-7)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044)867-4556	
서울 (3개소)	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02)6011-1871
	서대문구	서대문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3-1	02)304-1376
	금천구	금천행복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B10호	02)808-1671
부산 (17개소)	광역시	부산광역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 302호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051)791-1377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강서구 순아강변길5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271-0561
	금정구	금정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	051)508-1997
	기장군	기장군푸드뱅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288번길 27, 2층	051)724-3457
	남구	남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258	051)647-3655
	동구	동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57 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1)633-3367
	동래구	동래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07번길 151	051)531-2460
	부산진구	부산진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6 당감종합사회복지관	051)896-2320
	북구	북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74	051)331-4674
	사상구	사상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33	051)305-4286
	사하구	사하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	051)265-9471
	서구	서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85번길 42, 1층	051)243-1367
	수영구	수영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련로 43번길 54	051)755-3367
	연제구	연제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로 179	051)863-8360
	영도구	영도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3-16	051)404-5061
	중구	중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09	051)464-3137
	해운대구	해운대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051)782-5005
대구 (13개소)	광역시	대구광역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81	053)474-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7길 80	053)254-1388
		대구나눔과기쁨 푸드뱅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34 (811호)	053)475-6960
	동구	동구동촌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5	053)986-1377
		동구제일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17-6	053)755-1377
		동구진명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39	053)746-1377
	남구	남구대명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8	053)657-1170
	북구	북구산격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	053)381-9193
	수성구	수성구지산푸드뱅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25	053)781-1377
	달서구	상록수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3길 25	053)716-6123
달서구본동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8	053)639-1377	
달서구성서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053)582-1376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달성군	달성군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9	053)615-9191
인천 (14개소)	광역시	인천광역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032)891-1377
	강화군	강화군푸드뱅크	인천광역시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	032)932-1378
	계양구	계양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	032)555-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4, 1층	032)469-1377
		남동구새희망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744, 1층	032)437-1377
	동구	동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로36번길 1, 1층 102호	032)763-1377
	미추홀구	미추홀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42번길 30	032)861-1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뱅크1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56	032)519-1377
		부평구푸드뱅크2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18	032)511-1377
	서구	서구태화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032)564-1377
		서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032)574-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032)818-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중구 흥예문로 77	032)761-1399
		비손행복나눔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152번길 5-1	032)221-0191
광주 (16개소)	광역시	광주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광주사회복지회관 1층	062)351-2114
	광산구	송광푸드뱅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17	062)945-1377
		만나푸드뱅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5-9	062)941-1377
		청지기푸드뱅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43 대덕1차 상가1층	062)941-8209
	남구	남구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062)673-1377
		희망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31번길 13	062)653-9313
	동구	동구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656	062)234-1377
	북구	북구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207번길 6	062)266-1377
		두암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	062)266-8185
		오치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94번길 6	062)574-1377
		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풍동길 20	062)512-1125
		섬기고나눔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062)524-1377
	서구	행복나눔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당포로 12	062)525-1691
		서구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32번길 23	062)375-1377
		쌍촌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 47	062)384-1377
			시영기초푸드뱅크	광주광역시 서구 화장로 87-1
대전 (10개소)	광역시	대전광역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805호)	042)525-1378
	대덕구	대덕나누리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2번길 51, 103호	070)4063-6063
		산마을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44번안길 14, 1층	042)933-1377
	동구	새소망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동구 갯이길 49	042)624-1377
		나눔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174번안길 20	042)623-5060
	서구	한밭사랑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91	042)535-0191
유성구	대전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 농수산물도매 3문 경사로 옆	042)822-7986	

Ⅲ 기 타 -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현황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마라나타 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들3길 77-30	042)935-6889	
	중구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 (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 39	042)242-2700
		조은이웃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중구 당지로36번길 99, 103호	042)825-9182
울산 (8개소)	광역	울산광역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85(남외동 동천체육관내)	052)285-1378
	중구	중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99 중앙동행정복지센터	070)4124-8852
		아름다운푸드뱅크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366-1	052)292-1365
	남구	남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25번길 34	052)274-1377
		남구나눔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50번길 45	052)257-1377
	동구	동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5길 27	052)236-1377
	북구	북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052)291-1377
		나눔과기쁨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1길 1층	052)289-9543
세종 (2개소)	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6층	044)868-1311
	조치원읍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6층	044)868-1311
경기 (69개소)	광역	경기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 및 남부)경기도 화성시 쾌랑1길 42-30	031)294-1377
	물류센터		(북부)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 303(봉양동)	070-4209-9627
	가평군	가평푸드뱅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로 44(달전리)	031)581-2727
	고양시	고양시현돌기초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백석동, 고양시현 돌종합사회복지관)	031)905-3400
		고양시문촌7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1층(주엽동)	031)916-4071
		고양시문촌9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1층(주엽동)	031)917-0202
		덕양행신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3(행신동)	031)839-6000
	광주시	광주시중앙푸드뱅크 &푸드마켓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0-11(중대동)	031)766-1377
		광주시참사랑푸드뱅크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1-3(역동)	031)8028-8906
		늘만나푸드뱅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11번길 8 204호(곤 지암리)	031)764-0091
	구리시	구리시푸드뱅크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50(토평동)	031)556-8100
		구리사랑나눔푸드뱅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54, 상가동 102호 (토평동, 우남아 파트)	031)555-1243
	군포시	군포시푸드뱅크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02 1층(금정동)	031)397-2054
	김포시	김포시푸드뱅크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1521(장기동)	031)996-1377
		김포한강푸드뱅크	경기도 김포시 월하로 762(마곡리)	031)997-1370
		새희망푸드뱅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39(양곡리)	031)987-8116
	남양주시	남양주푸드뱅크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11-6, 2층(금곡동)	031)564-1377
	동두천시	동두천천사푸드뱅크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로6번길 2(광암동)	031)865-4577
	부천시	부천행복한동행푸드뱅크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63번길 104(도당동)	032)612-0124
		부천기초푸드뱅크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275번길 19(중동)	032)326-1477
복사골푸드뱅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54번길 10, 6층(심곡동)	032)651-9424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성남시	성남시청솔푸드뱅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금곡동)	031)714-6333
	희망대푸드뱅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7, 3109동 에듀센터 (창곡동)	031)754-0011
수원시	수원시장안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63번길 8(영화동)	031)271-1377
	수원시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동)	031)257-1378
	영통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27번길 40, 1층 (매탄동)	031)212-1641
	팔도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47번길 88(세류동)	031)221-9004
시흥시	행복나눔푸드뱅크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68-1	070)8245-0675
안산시	안산시광림푸드뱅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1길 6(고잔동)	031)487-1377
	안산나눔푸드뱅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초지동 712-4	031)419-1377
	안산사랑푸드뱅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3길 6-1(수암동)	070-5014-5855
	안산푸드뱅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1길 37 1층(이동)	031)415-7890
안성시	서안성푸드뱅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79-17(진사리)	031)652-5085
	안성동부푸드뱅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292-22(죽산리)	070-7788-1377
	안성시푸드뱅크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451번길 11(봉남동)	031)674-9451
	안성연화마을푸드뱅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93(화봉리)	031)674-1356
안양시	안양시푸드뱅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평생학습원 2층(비산동)	031)386-9957
	유쾌한푸드뱅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5, 지하층(안양동)	031)442-8488
양주시	양주시초푸드뱅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93(가남리)	031)837-1377
양평군	양평군기초푸드뱅크	경기도 양평군 용문역길 67(다문리)	031)775-7741
여주시	여주시구세군푸드뱅크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39-11(현암동)	031)885-1138
	여주시푸드뱅크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19-1(교동)	031)886-9101
	여주좋은이웃푸드뱅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자유그린길 37(삼군리)	031)884-1377
연천군	연천군푸드뱅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40번길 1(전곡리)	031)833-1010
오산시	오산시푸드뱅크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23 (오산동)	031)378-1377
용인시	아름다운동행 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1번길 8 드빌 105(김량장동)	031)339-1377
	용인시사랑나눔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84번길 5-17(신갈동)	031)281-1377
	용인시여럿이함께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석성로 1087 2층(영문리)	031)333-1377
	희망나눔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42, 오토허브 C동 B101(영덕동)	031)333-4646
	문화협회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마평동)	031)321-9100
의왕시	의왕시푸드뱅크	경기도 의왕시 효행로 46(오전동)	031)458-3030
의정부시	나누리푸드뱅크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24번길 10(가능동)	031)826-0778
이천시	이천시선양푸드뱅크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02 (중리동)	031)637-1377
	이천시푸드뱅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로 18 만옥빌딩 3층(신원리)	031)634-1377
	소망더함푸드뱅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05-6(이치리)	031)631-1377
	웃어려나눔과기쁨푸드뱅크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71번길 14(창전동)	031-632-6066
파주시	파주시사랑나눔푸드뱅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138(봉서리)	031)949-1377
	파주시희망나눔푸드뱅크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 301호(문발동)	031)945-3054

Ⅲ 기 타 -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현황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승단푸드뱅크	경기도 평택시 탄현1로 160, B102호	031)662-2677
		서평택푸드뱅크	경기도 평택시 안중로99번길 13, 1층(안중리)	031)686-7553
		평택푸드뱅크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28번길 34	031)618-1877
	포천시	포천시푸드뱅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3(가채리)	031)535-1376
		솔모루푸드뱅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132번길 56(송우리)	031)543-1377
	하남시	하남시푸드뱅크	경기도 하남시 덕포로81번길 18(덕포동)	031)793-6920
	화성시	봉담아리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덕머루서길 9-9(덕우리)	0507)-1370-1376
		화성시행복나눔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행정리)	031)8059-1677
		화성은혜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3길 7-5(능동)	031)8003-6004
		사랑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5-6 301호(능동)	031)225-1377
		비전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수풀오얏길 65-9(장외리)	031)355-1277
화성여럿이함께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남여울3길 9-10(능동)	031)613-1907		
광역시	강원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구정중앙로 158-10	033)646-0197	
강릉시	강릉푸드뱅크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69. B110	033)643-1377	
	강릉자유푸드뱅크	강원도 강릉시 구정중앙로 158-10 2층	033)647-6090	
고성군	고성푸드뱅크사랑나눔센터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태봉2길 24	033)681-1376	
동해시	동해시기초푸드뱅크	강원도 동해시 선돌길 19	033)533-1155	
삼척시	삼척시푸드뱅크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2길 72-6,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033)575-0516	
속초시	속초기초푸드뱅크	강원도 속초시 먹거리길 19 주공3차 아파트 단지 내	033)635-0758	
양구군	양구기초푸드뱅크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구새싹로 7-11	033)482-1377	
	양구한마음푸드뱅크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61	033)481-7733	
양양군	양양푸드뱅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42	033)673-4848	
영월군	영월군푸드뱅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 4길 19-5	033)374-6411	
원주시	원주만나푸드뱅크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82번길 36	033)734-6552	
	원주시푸드나눔센터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033)747-1347	
	문막푸드뱅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택지길9	033)734-0691	
인제군	인제기초푸드뱅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8 2층	033)463-1377	
정선군	정선기초푸드뱅크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1로 56	033)692-4115	
춘천시	춘천시푸드뱅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04-1	033)262-3494	
철원군	철원군푸드뱅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80	033)458-2998	
태백시	태백기초푸드뱅크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398-8	033)553-8155	
평창군	평창군푸드뱅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033)334-0117	
홍천군	홍천군기초푸드뱅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1	033)433-8587	
화천군	화천푸드뱅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033)442-1992	
횡성군	횡성군기초푸드뱅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033)342-1104	
충청북도 (23개소)	광역시	충청북도 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043)234-1377
	청주시	흥덕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65	043)267-1377
		구세군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45번길 15, 뉴타운아파트상가 A동 202호	043)254-1377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71번길 20-3	043)266-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충청북도	드림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리로17번길 27-40	043)218-7991	
	제일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청주제일교회	043)256-3816	
	청원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737	043)218-1377	
	대청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1길 13-2	043)221-7838	
	충주시	충주시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충주시 주공길 7	043)855-3000
	제천시	제천시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390	043)645-5004
	보은군	보은군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07	043)544-1377
	옥천군	옥천나눔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응천1길 63-3	043)731-6231
	영동군	영동군나눔푸드뱅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 1로 71	043)744-4949
	증평군	증평군푸드뱅크	충청북도 증평군 창신로 85	043)836-6040
	진천군	진천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2	043)533-4911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72-1 상가 105호	043)536-0129
	괴산군	괴산군푸드뱅크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걱정로 104	043)834-1377
		괴산나눔과기쁨푸드뱅크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1길 8	043)832-3197
	음성군	음성군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40번길 9-1, 더테라스시티 201,202호	043)873-2882
		관성푸드뱅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547번길 12	043)877-9457
		한울사랑나눔푸드뱅크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1620번길 7	043)878-4312
	단양군	단양나눔과기쁨푸드뱅크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장림1길 6	043)421-1324
		단양군푸드뱅크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3층	043)422-1700
충청남도 (19개소)	광역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1층	041)635-0876	
	계룡시	계룡시사랑나눔푸드뱅크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320, 402호	042)551-9191
	공주시	공주시기초푸드뱅크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길 48-8	041)857-6004
	금산군	금산군푸드뱅크	충청남도 금산군 일흔이재로 112	041)752-7942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뱅크	충청남도 논산시 생외길 14	041)736-1004
	당진시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823-2	041)355-5700
		보령시	보령시푸드뱅크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50
	부여군	행복보령푸드뱅크	충청남도 보령시 원동1길 95 1층	041)931-8502
		부여나눔푸드뱅크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송서로 128-3	041)832-0811
	서산시	서산시기초푸드뱅크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3456	041)667-2303
		서산카리타스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충청남도 서산시 효행7로 10-3	041)688-1997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뱅크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0, 1층	041)951-9444
	아산시	아산시기초푸드뱅크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안길 2-23	041)534-1377
	예산군	예산군기초푸드뱅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3길 57	041)332-5402
	천안시	천안기초푸드뱅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하늘샘교회	041)523-1377
		천안서부푸드뱅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3-31	041)553-9004
		충남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7	041)582-1388
	청양군	청양푸드뱅크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402	041)944-1500
	태안군	태안군푸드뱅크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2	041)675-1379

Ⅲ 기 타 -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현황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전북 (19개소)	광역	전라북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3층	063)224-1861
	고창군	고창군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6-13	063)561-2350
		선운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6	063)561-1378
	군산시	군산시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로 59	063)461-6555
		동군산푸드뱅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하금길 37-1	010)3671-0202
	김제시	김제시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93	063)543-1377
	남원시	남원시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063)632-5252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531, 초록빌 1층	063)631-0133
	순창군	순창군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30, 3층	063)653-9120
	완주군	완주군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별산농원길 20	063)232-1377
	임실군	임실군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공덕1길 39	063)643-6688
	장수군	장수군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27-9	063)351-2792
	전주시	전주시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 18-34	063)225-4215
		이웃사랑푸드뱅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80 1층	070-4940-6569
		전주시중앙푸드뱅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23-25	063)254-2758
		전주시새샘푸드뱅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덕산1길 82	063)286-0217
	정읍시	정읍시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2로 13-18	063)533-1916
		참좋은푸드뱅크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61	063)532-0191
	진안군	진안군기초푸드뱅크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	063)432-9007
전남 (26개소)	광역	전라남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1층)	061)283-8477
	강진군	강진군푸드뱅크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백금포길 7 2층	061)434-7002
	고흥군	고흥군푸드뱅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1층	061)832-2500
	곡성군	곡성군푸드뱅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19길 8	061)363-2171
	광양시	광양시푸드뱅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2층 1호	061)762-9894
	구례군	구례군다빈푸드뱅크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1층 구례지역자활 센터	061)781-7970
	나주시	나주시푸드뱅크	전라남도 나주시 가마태길 38	061)334-7727
	담양군	담양군푸드뱅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431-33	061)381-1376
	목포시	예향참맛푸드뱅크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34	061)242-8980
		예사랑나눔푸드뱅크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61-2 용당교회탁노소	061)279-0954
	무안군	무안군기초푸드뱅크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493	061)283-1888
	보성군	보성군푸드뱅크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인길 18-6	061)852-9845
	순천시	순천시푸드뱅크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길 84	061)741-3062
	신안군	1004섬신안기초푸드뱅크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8	061)261-1377
	여수시	여수시문수푸드뱅크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1-10	061)652-2010
		여수시쌍봉푸드뱅크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061)68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51-14	061)353-9740
	영암군	영암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새동네길 22-1	061)471-9933
	완도군	완도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16	061)554-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장성군	장성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 11길 3	061)394-5909
	장흥군	장흥엄마손푸드뱅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	061)864-4804
	진도군	진도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4길 25	061)544-2210
	함평군	함평군푸드뱅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071	061)324-2331
		함평희망나눔기초푸드뱅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송정길 49-5	061)324-1881
	해남군	해남군푸드뱅크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5	061)535-1377
화순군	화순군푸드뱅크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학포로 1303-1	061)371-1377	
경북 (23개소)	광역	경상북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59, 제1동 3층 302호	054)843-8550
	경산시	경산시푸드뱅크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79	052)813-1102
	경주시	경주시푸드뱅크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1길 32	054)771-8107
	구미시	구미사랑나눔푸드뱅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로2길 4	054)441-1377
		구미푸드뱅크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0 금오종합사회복지관	054)458-0230
	김천시	김천시푸드뱅크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3	054)439-2191
		글로벌희망나누리푸드뱅크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길 13-3 104호	054)432-6008
	문경시	문경시푸드뱅크	경상북도 문경시 시청1길 16	054)555-2800
	상주시	상주시푸드뱅크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1길 43-18	054)532-5688
	성주군	성주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4	054)932-3551
	안동시	안동시푸드뱅크	경상북도 안동시 북주5길 23-17	054)858-1361
	영주시	영주시푸드뱅크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054)639-0514
	영천시	영천시푸드뱅크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195-6	054)335-3633
	울진군	울진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울로 49-1	054)788-2111
	의성군	의성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의성읍 의성읍 북원3길 51-6	054)834-2900
	청송군	청송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청송읍 청송읍 주왕산로 7-282	054)873-7447
	영덕군	영덕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9-6번지	054-732-1377
	청도군	청도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5	054)373-7575
	칠곡군	칠곡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2	054)979-5127
	포항시	포항우리푸드뱅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98번길 3-1	054)255-1377
		내일을여는집푸드뱅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35번길 1-4	054)244-1377
		경동푸드뱅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47번길 34	054)293-1378
		흥해제일푸드뱅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43	054)261-7525
경남 (21개소)	광역	경상남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경상남도 칠산로 128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070)4266-1201
	거제시	거제시푸드뱅크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2길 42	070)4470-3544
	거창군	거창푸드뱅크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68	055)942-7934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1길 95-1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055)674-6628
	김해시	김해이웃사랑푸드뱅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76번길 21-10	055)324-4179
		초록나눔사회적협동조합 나눔푸드뱅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14 일동한신아파트상가 1동 125호	055)311-9745
	남해군	남해군푸드뱅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055)860-3883
밀양시	밀양시기초푸드뱅크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18	055)350-1012	

Ⅲ 기 타 -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현황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푸드뱅크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5길 15	055)831-5794
	산청군	산청군푸드뱅크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84	055)973-8267
	양산시	양산시기초푸드뱅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10길 8	070)4639-4640
	진주시	진주푸드뱅크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81	055)747-1377
	창녕군	창녕군푸드뱅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7	055)532-0624
	창원시	마산시기초푸드뱅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055)231-8018
		창원시진해기초푸드뱅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055)540-0114
		창원시기초푸드뱅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00번길 2	055)253-1377
	통영시	통영푸드뱅크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94(무전동)	055)640-7704 055)646-1377
	하동군	하동군기초푸드뱅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055)884-6955
	함안군	함안군푸드뱅크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철로 155	055)580-2454
	함양군	함양군푸드뱅크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월명길 12	055)962-2071
	합천군	합천푸드뱅크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33-2	055)931-2370
	제주 (3개소)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부식품등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제주시		동제주시기초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064)751-1377
		북부기초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064)796-9097

푸드마켓

(2023.12월 기준)

구분	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서울 (28개소)	강남구	강남푸드지원센터1호점	서울 강남구 개포로 652 1층	02)3412-1377
		강남푸드지원센터2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2길 7 1층	02)565-0377
	강동구	강동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26	02)427-1377
		나눔과기쁨 푸드마켓, 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7길 48 1층	02)428-5182
	강북구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148길 12-13, 204호 (칸타빌수유팰리스)	02)991-1377
	강서구	강서푸드뱅크·마켓(공항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통합복지센터 1층	02)2635-1377
		강서푸드뱅크·마켓(등촌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2길 19	02)2663-1377
		사랑의등불 강서푸드뱅크마켓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가길 27 103, 104호	02)2643-1377
	관악구	관악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길 13 다이아몬드빌딩 5층 501호	02)872-1377
	광진구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	02)499-1377
	구로구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50길 10	02)3283-1377
	금천구	금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	02)3286-1377
	노원구	노원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B1층	02)975-1277
	도봉구	도봉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도봉로170길 2 도봉역 다가치센터 16구역	02)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푸드뱅크마켓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1층	02)2246-0036
	동작구	동작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07호, 206호	02)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내 1층	02)364-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6길10 우리마포복지관 B1층	02)703-1377
	서대문구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1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0	02)392-1377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83	02)3157-1377
	서초구	서초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3 B2층	02)577-5864
	성동구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23 201호	02)425-1377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1호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301호	02)981-1377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2호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페산로 4 1층	02)909-1377
	송파구	송파푸드마켓, 송파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1길 2	02)2043-1377
	양천구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1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50 양천나눔누리센터 1층	02)2062-1377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2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3길 73	02)2644-1377
	영등포구	영등포구푸드뱅크마켓1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02)2632-1377
영등포구푸드뱅크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4길 9-17	02)843-1377	
영등포구푸드뱅크마켓3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8길 7	02)846-1377	
용산구	용산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5	02)703-0129	
은평구	은평푸드뱅크마켓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34-5	02)354-1377	
종로구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1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 송인1동주민센터 4층	02)2148-4102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2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9 웰니스센터 B110호	02)2148-4101	

Ⅲ 기 타 -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현황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중구	중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02)2297-1377
	중랑구	중랑푸드마켓·뱅크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22	02)493-1582
		중랑푸드마켓(면목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42	02)6952-1376
부산 (16개소)	강서구	강서구동지푸드마켓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07	051)711-1378
	금정구	금정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051)911-1377
	기장군	기장푸드마켓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28	051)722-4006
	남구	남구동행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53번길12-20	051)638-1377
	동구	동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동구 진성로 68	051)905-1378
	동래구	동래등대지기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59-1	051)506-1377
	부산진구	부산진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882	051)853-1377
	북구	북구행복나눔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115번길 11	051)335-8377
	사상구	사상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주로 6-9	051)325-1399
	사하구	사하사랑나눔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544, 204호	051)262-1377
	서구	푸르미&나눔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85번길 42, 1층	051)254-1377
	수영구	함께하는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249번길 12-18	051)756-1925
	연제구	연제구동지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87번길 6	051)714-1378
	영도구	영도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514	051)405-4377
	중구	중구다솜나래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84-1	051)463-1388
	해운대구	해운대푸드마켓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79, 2층	051)781-1373
대구 (9개소)	중구	행복한중구푸드마켓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9-1	053)256-1377
		중구만나푸드마켓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43안길 50-10	053)257-1377
	남구	늘해랑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5길 9	053)473-1377
	서구	행복마당푸드마켓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99 B동(비산동)	053)262-1377
	북구	사랑나눔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9길 10-25	053)321-1377
		희망나눔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28	053)954-1377
	달서구	달서구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8	053)636-1377
		두류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50길 23	053)652-5300
달성군	행복한달성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01-6	053)588-1375	
인천 (14개소)	강화군	강화군푸드마켓	인천광역시 강화읍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12	032)934-0808
	계양구	계양구푸드마켓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	032)551-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4, 1층	032)463-1377
		남동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1층	032)431-1377
	동구	동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81번길 27	032)773-2377
	미추홀구	미추홀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42번길 30	032)875-1377
		미추홀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27	032)889-1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56	032)426-1377
		부평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18	032)511-1377
	서구	서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35-12	032)576-1377
		서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24	032)584-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519번길 3-2	032)817-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광주 (3개소)	연수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032)834-2377	
	중구	중구푸드마켓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77	032)777-0377
	동구	동구푸드마켓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223번길 14-31	062)222-1377
	북구	행복나눔푸드마켓북구점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32	062)264-1377
	서구	행복나눔푸드마켓서구점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9	062)374-1377
대전 (9개소)	대덕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08번길 15	042)637-1377
	동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2호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2-1	042)633-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7호점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203번길 1	042)286-1377
	서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1호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219번길 17	042)488-1370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8호점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99-1	042)528-5290
	유성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4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36번길 1	042)935-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6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1	042)826-6377
	중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5호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42	042)256-1377
대전행복나눔푸드마켓(유천점)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93, 1층	042)522-7100	
울산 (2개소)	남구	울산광역시시나눔푸드마켓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50번길 45	052)252-1377
	울주군	울주푸드뱅크마켓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1	052)224-1377
경기 (15개소)	고양시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46번길 55, 1층(백석동)	031)902-1377
	광명시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삼로 9 1층(광명동)	02)2688-1377
	부천시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275번길 19(중동)	032)324-1688
	성남시	성남열린푸드마켓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 지하 2층 상점 17호(야탑동)	031)756-1378
	수원시	해누리푸드마켓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동)	031)238-1378
	시흥시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45번길 7(정왕동)	031-434-1378
	안양시	안양착한푸드뱅크마켓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정내로 113(안양동)	031)476-1365
	양주시	양주연화푸드마켓	경기도 양주시 외미로64번길 45(남방동)	031)861-1377
	의정부시	의정부푸드뱅크마켓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2번길 12(용현동)	031)837-6114
	이천시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38번길 35(중리동)	031)638-1375
	파주시	파주시희망푸드마켓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 107호(문발동)	031)949-2215
	평택시	평택시푸드마켓1호점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28번길 34	031)618-1877
		평택푸드마켓2호점	경기도 평택시 탄현1로 160, B102호 (신장동)	031)664-1377
	화성시	화성시행복나눔푸드마켓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행정리)	031)8059-1678
		화성시나래울푸드마켓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 33(능동)	031)8015-7400
강원 (1개소)	원주시	원주시푸드나눔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101호	033)747-1347
충북 (6개소)	청주시	청주시푸드마켓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83번길 35	043)222-9171
	충주시	충주시푸드마켓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1길 34 지하1층	043)855-1377
	제천시	제천시푸드마켓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50	043)647-1377
	괴산군	괴산군푸드마켓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08	043)834-1377
	단양군	단양군푸드마켓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043)422-1700
	옥천군	옥천군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4길6	043)733-2500

Ⅲ 기 타 -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현황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충남 (7개소)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마켓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277번길 23-13	041)736-1377
	보령시	행복보령푸드마켓	충청남도 보령시 원동1길 95 1층	041)931-8502
	서산시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충청남도 서산시 효행7로 10-3, 나동	041)665-1377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마켓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0, 1층	041)951-9444
	예산군	예산다다푸드마켓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23번길 6	041)335-8700
	천안시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24	041)573-1377
	홍성군	홍성군푸드마켓·뱅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14	041)634-7377
전북 (9개소)	고창군	고창군푸드마켓	전라북도 고창군 전봉준로 96	063)561-1378
	김제시	김제지평선푸드마켓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93	063)543-1377
	무주군	무주행복나눔푸드마켓·뱅크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294	063)322-1370
	부안군	부안행복나눔푸드마켓·뱅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97-1	063)581-5723
	익산시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7길 2-9	063)854-1377
	전주시	전주시행복나눔푸드마켓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45	063)286-1377
		전주시중앙푸드마켓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2길 76 101호	063)254-2758
	정읍시	참좋은푸드마켓	전라북도 정읍시 명덕로 55	063)531-0191
	진안군	진안마이푸드마켓	전라북도 진안군 관산2길 10	063)433-1415
전남 (4개소)	무안군	햇살나눔푸드마켓1호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061)283-1477
	여주시	햇살나눔푸드마켓2호점	전라남도 여주시 신기북 4길 11-1	061)642-1477
	순천시	순천시푸드마켓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2길 3-11	061)746-8206
	영광군	영광군푸드마켓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49, 402	080)353-1377
경북 (3개소)	경산시	경산푸드마켓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19길 3-2	053)802-1377
	구미시	구미시푸드마켓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0	054)443-1377
	포항시	포항시푸드마켓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61번길 5-1	054)231-1377
경남 (4개소)	김해시	김해시푸드마켓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232, 4층	055)328-1377
	진주시	진주푸드마켓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81	055)747-1377
	창원시	창원시희망푸드마켓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7	055)283-1377
	통영시	통영나눔푸드마켓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 36-43, 1층 27호 (무전동, 국제아파트)	055)640-7704 055)646-1377
제주 (2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85, 1층	064)758-1377
	서귀포시	행복나눔푸드마켓·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	064)733-1388

